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

제 6 판

2020. 2. 20.

중앙방역대책본부

- (법적 근거) 중국 후베이성(우한) 등에서 처음 보고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임상양상, 역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때까지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을 적용하여 대응
- (대응 방향) 호흡기 전파 감염병인 메르스 대응절차에 준하여 대응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해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를 근거로 지침 작성
 - 향후 발생 상황과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사례정의, 잠복기, 대응절차 등 변경

[주요 개정사항]

구분	내용		
	• 의사환자 사례 2에서 환자의 밀접접촉자를 접촉자로 변경 하여 지침 내 용어 일 인 성		
	유지		
사례	• 의사환자 사례 3은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인 자		
정의	• 국가지정입원병상 및 공공병원외에도 의료기관 자원활용		
	• 치사율이 높은 환자군에 대한 적극지원으로 치사율 감소		
	• 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조사 대상 유증상자를 추가하여 진단검사 대상자를 확대		
조치 사항	• 신고대상에서 불필요한 입원으로 병상이 부족하지 않도록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제시		
	• 중앙과 지자체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제시		
행정 사항	• 감시부터 환자, 접촉자의 관리 해제까지 순서도 작성		
~10	• 보건소, 선별진료소, 의료기관과의 업무를 구체화		
방역 및 소독	• 방역 조치와 소독 명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손실보상에 대한 근거 제시		
부록	• 역학조사서 일부 개정 - 위험요인 추가(임신 여부)		

[사례정의 신구비교표]

구분	현행(5판)	변경(6판)
의사환자 1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의사환자 2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u>밀</u> 접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u>접촉한</u>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 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의사환자 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역학적 연관성이 의 심되는 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인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1	<u>신설</u>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국가·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이 나타난 자 * 질본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수시 변동 가능함
조사대상 유증상자 2	<u>신설</u>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가 의심되는 자

〈목 차〉

I . 개요 ······	1
1. 대응원칙	1
2. 수행체계(경계 이상)	2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관련 정보	4
Ⅱ. 사례 및 접촉자 정의	5
1. 사례 정의	5
2. 접촉자 개념	6
3. 관리 방법	6
모바일 자가진단 앱	8
Ⅲ.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시 대응	9
1. 의사환자	12
2. 조사대상 유증상자	15
3. 의사환자의 조치	16
4. 의사환자의 접촉자 조사 및 관리	17
5. 의사환자의 격리해제	17
Ⅳ. 확진환자 발생시 대응	2 0
1. 환자 이송 및 격리 치료	20
2. 심층 역학조사	21
3. 방역조치	23
V. 음압병상 배정	24
VI. 실험실 검사 관리 ······	2 6
1. 검체 채취	26
2. 검사 의뢰	28
3. 검체 운송	28
4. 검사 시행	29
5. 결과 보고	29
VII. 환경관리	30
1. 소독의 일반 원칙	30
9 소도 공치······	31

< 서 식 >

1.	감염병 발생 신고서	34
2.	기초역학조사서(보건소용)	36
3.	격리 통지서(한글/영문)	37
4.	입원치료 통지서	38
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접촉자 조사 양식	40
6.	방역조치 관련 서식	41
7.	소독증명서	42
8.	검체시험의뢰서 서식	43
	〈 부 록 〉	
1.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45
2.	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 및 동거인을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46
3.	코로나19 예방수칙	47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개인보호구의 사용	
_		48
5.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요약)	
		55
6.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요약)	55 58

[중앙방역대책 본부 관련부서]

부서		업무		
위기 <u>소통</u> · 행정지원단	위기소통팀	· 언론소통(브리핑, 전화설명회 등) · 국민소통(콘텐츠 개발·배포, 소통채널 운영 등) · 1339 관리반 운영		
	행정지원팀	·방대본 행정 지원(인사, 물자지원 등)		
상황실		·즉각대응팀 운영 ·긴급상황실(EOC) 운영 ·신고·접수·대응 관리, 통계산출 ·일일보고 및 상황 전파		
	총괄팀/ 지침관리팀	· 방대본 운영 총괄 · 국내 환자발생 감시 및 발생 현황 보고 · 보도자료 등 대국민 홍보자료 작성 · 진단·신고기준 정립 · 가이드 제공		
상황 총 <u>괄</u> 단	상황분석 · 국제협력팀	·국내외 코로나19 정보 모니터링 ·정보 분석 및 분석 결과 공유 ·국외 정부 및 국제기구와 국제협력 채널가동		
	검역관리팀	· 검역조치 총괄 · 국립검역소 상황 전파 · 입국자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 해외여행객 대상 홍보		
의료기관・	의료기관 · 감염관리팀	· 의료기관 관리 · 선별진료소 관리		
자원관리단	의료 자원관리과	·국가 비상 의료자원 관리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국가비축물자, 인력)		
환자・접촉자	역학조사팀	·시·도 및 시·군·구 역학조사 지도, 교육 ·감염원, 감염경로 규명을 통한 역학적 특성 분석 ·환자/접촉자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관리단	입국자 관리팀	·입국자 관리(유학생 등) ·모바일 자가 진단앱에 대한 유증상자 관리		
진단분석	진단검사 총괄팀			
관리단	검사분석팀	·병원체 확인 검사 ·바이러스 분리배양 및 유전체분석 ·검사법 보급 및 정도평가 ·검사법 개선 및 개발		

I 개요

1. 대응 원칙

가. (법적 근거) 중국 후베이성 등에서 보고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는 임상양상, 역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때까지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을 적용하여 대응

나. (대응 방향)

- 코로나19의 조기 인지 및 발생양상 파악
- 코로나19의 신속한 역학조사, 환자 및 접촉자 관리
- 코로나19의 예방에 대한 교육 홍보 강화

다. (관리 정책)

- 감시-역학조사-관리 등을 통한 감염병 전파방지
- 손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교육・홍보로 감염예방
- 지자체, 민간의료기관 및 관계기관의 협력 체계구축으로 지역사회 역량강화

< 관리정책 요약>

감시	역학조사	관리	교육·홍보·협력
 환자 감시 집단발생 병원체 균주분리동정 의심균주확인 유전자분석 등 	 발생규모 파악 감염원 및 병원체규명 전파 차단 추가 발생 예방 	① 환자 • 환자 조기 발견 및 치료실시, 격리 ② 접촉자 • 발병여부 확인 • 필요시 격리/ 감시 ③ 환경 • 소독 및 방역조치	•지자체 역량강화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지역사회 교육·홍보

2. 수행 체계 (경계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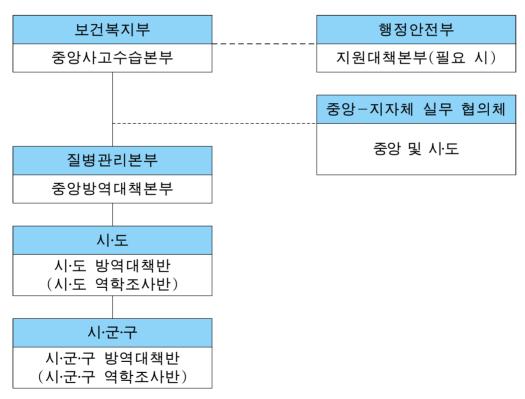
가. 기구 설치

- 질병관리본부에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 지속
- 보건복지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
- 시·도, 시·군·구에 **방역대책반** 운영 지속, 발생지역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나. 실무협의체

○ 중앙과 시·도의 업무조정을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차관) 산하에 중앙 -지자체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다. 중앙-지자체 기관별 역할



<그림 1. 중앙 지자체 기관별 역할 모식(경계단계 이상)>

라. 기관별 임무

관련기관	역 할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 지속 ○ 역학조사 실시 및 방역 등 현장 조치 강화 ○ 국가 방역 인프라 가동 강화, 필요시 추가 가용 자원* 동원 * 감염병 관리기관 추가 지정, 임시격리소 활용, 집중관리 병원 지정, 민간검사기관・민간의료인, 방역물자 추가 확보 등 ○ 위기상황 모니터링 및 평가 강화 ○ 24시간 긴급상황실 운영 강화 ○ 검역 강화 등을 통한 추가 유입 방지 등 ○ 환자 조기발견 감시체계 강화 ○ 실험실 검사 관리(기관 확대, 질관리 등) ○ 유관기관 상호협력, 조정 체계 운영 ○ 언론소통(브리핑, 보도자료, 취재지원), 민원대응 및 국민소통 관리		
시 · 도 시 · 군 · 구	○전국 모든 시·도 및 시·군·구 지역방역대책반 운영 ○발생지역 시·도 및 관할 시·군·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중앙-지자체 실무협의체 운영 협조 ○지역 역학조사 실시 및 현장 방역 조치 ○지역 환자 감시체계 강화 ○지역 방역 인프라 가동 강화 ○지역 역학조사, 현장방역조치, 환자 이송, 접촉자 파악 지원, 환자 및 접촉자 관리 등 강화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지역 주민 대상 교육·홍보 등 소통 강화 ○지역 내 격리병상, 격리시설 관리 및 추가 확보계획 마련 ○방역업무 중심 보건소 기능 개편 및 검사인력 보강		
보건환경연구원	○시·도 단위 코로나19 병원체 실험실 검사 ○시·도 단위 코로나19 병원체 실험실 감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시·도 코로나19 감시·역학조사·자료분석 등 기술지원 ○시·도 단위 지역별 맞춤형 코로나19 관리 기술지원		
의료기관	○코로나19 (의심)환자 진단 및 치료 ○코로나19 신고·보고 ○코로나19 환자발생 시 역학조사 및 감염병관리 협조 ○코로나19 환자 선별진료소 운영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관련 정보

* 바이러스 특성이 밝혀지는 대로 업데이트 예정

	100 EQUIC 112 BIND NO				
정 의	• SARS-C ₀ 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				
질병분류	• 법정감염병 :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				
• 질병 코드 : U07.1					
병원체	• SARS-CoV-2 : Coronaviridae에 속하는 RNA 바이러스				
	• 현재까지는 비말, 접촉을 통한 전파로 알려짐				
전파경로	- 기침이나 재채기로 호흡기 비말 등				
	- 오염된 물건을 만진 뒤 눈, 코, 입을 만짐				
잠복기	• 1~14일 (평균 5~6일)				
	• 환자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진단기준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에서 바이러스 분리				
	- 검체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증상	• 발열, 인후통, 호흡곤란 및 폐렴 등 다양하게 경증에서 중증까지 호흡기감염증이				
00	나타남				
치료	• 대중 치료 : 수액 보충, 해열제 등 보존적 치료				
*411	• 예방백신이나 특이적인 항바이러스제 없음				
치명률	• 치명률은 1~2%이나 아직 확실하지 않음				
	• 단, 고령,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가 주로 중증, 사망 초래				
	< 환자 관리>				
71.71	• 표준주의, 비말주의, 접촉주의 준수				
관리	• 증상이 있는 동안 가급적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하도록 권고				
	<접촉자 관리>				
	• 감염증상 발생 여부 관찰				
	• 백신 없음				
	• 올비른 손씻기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예방	-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등 실시				
-10	• 기침 예절 준수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Ⅱ 사례 및 접촉자 정의

본 사례 정의는 **국내 확진환자가 있으나 지역사회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단계'** 상황에 적용하며, 국내 확진환자 발생, 역학조사 결과 및 유행 수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사례 정의

- 확진환자
 -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진단검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전자(PCR) 검사, 바이러스 분리
- 의사환자
 - ①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C 이상) 또는 호흡기 중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②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③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인 자
- 조사 대상 유증상자
 -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국가·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 질본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수시 변동가능
 - ②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의심되는 자

※ 사례)

- 1)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입국자와 자주 접촉하여 노출위험이 있는 사람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국가·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 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와 접촉 후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이 나타난 자
- 3)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원인미상 폐렴환자
- 4) 기타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의심되는 자

< 신고 대상 >

+

+

- 1.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2.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방문

3. 최근 14일 이내에 **확진환자와 접촉**한 자 <u>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u> (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4.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
- 5. 최근 14일 이내에 **코로나19 발생 국가지역* 방문**

<u>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u> (**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6.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 * 질본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수시 변동 가능

2. 접촉자 개념

- 접촉자란 확진환자 또는 의사환자와 접촉한 자를 의미
 - 접촉자의 구분은 역학조사관이 역학조사를 통해 확정함
 - 접촉자는 역학조사에서 확정된 자 외에 신고, 접촉자 모니터링 등을 통해 추가 될 수 있음

3. 관리 방법

- 가. 대상자 모니터링
 - 모니터링 개념 : 최대 잠복기(14일) 동안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는지 확인 하는 것을 의미
 - 능동감시
 - 방법 : 입국일로부터 14일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생 유무를 실거주지 관할 보건

소에서 1일 2회 능동적(전화 또는 문자 등)으로 확인하는 방법

- 담당 : 대상자의 실거주지 관할보건소
- * 자택 외 장소에서 격리 시 대상자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서 담당
- ** 대상자가 격리장소를 이동할 경우 이동 전 소재지 보건소에서 이송, 이동 후 소재지 보건소에서 모니터링 및 관리 지속

나. 보건교육

- 외출자제, 대중교통 이용자제,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타인과의 접촉 자제, 호흡기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마스크 착용, 손씻기 강조, 기침예절 준수,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국가 방문력 알리기 등
- 증상 악화 시 보건소 또는 1339로 우선 문의

다. 대상자 격리 방법

- 대상자 격리 개념
 - 잠복기 또는 감염 노출 후 잠복기 동안 이동을 제한하고 다른 사람들과 분리된 공간에 머물게 하여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찰하는 것을 의미
 - 접촉자 격리방법은 머무는 장소에 따라 자가격리, 시설격리, 병원격리로 구분

○ 대상자 격리방법

- 자가격리 : 확진환자의 접촉자 또는 의사환자를 잠복기 동안 자택의 독립된 공간에 격리
- 시설격리 : 확진환자의 접촉자 또는 의사환자를 잠복기 동안 별도로 지정한 시설에 격리
- 병원격리 : 확진환자의 접촉자 또는 의사환자 중 입원 치료가 필요하여 잠복기 동안 병원에 격리
- * (공통) 접촉자의 격리 기간 중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발생이 인지되면 보건소는 기초조사 후 의사환자 분류시 시·도 역학조사관과 협의하여 결정

〈모바일 자가진단 앱〉

① 유증상자 인지 및 지자체 전파(중앙방역대책본부)

- (대상) 중국 입국자 중 모바일앱 또는 콜센터 전화를 통해 연속 2일 이상 증상을 호소한 유증상자
- (전파) 매일 09시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유증상자 명단을 받아 지자체 송부
 -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유증상자관리시스템(가칭)"에 일괄 업로드

<참고> 일일 자가진단 증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증상 종류("오늘 발생한 증상")
 - ① 발열(37.5℃ 이상) 또는 발열감, ② 기침, ③ 인후통/목아픔, ④ 숨가쁨/호흡곤란
- * 증상이 하나라도 있다고 표시할 경우 횟수에 따라 조치 (1회 증상 호소 시 1339 안내 메시지 표출, 2회 이상 증상 호소 시 지자체를 통한 관리)

2 지자체별 유증상자 관리

- 명단 배정된 지자체에서 유증상자 대상 유선연락
- 내국인의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증상여부 재확인
-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 주소 재확인, 체류지 주소 관할 보건소에서 증상여부 재확인
- * 배정 지자체와 거주지(체류지) 주소가 다른 경우 해당 보건소로 관리 이관
- 유증상자 증상별 조치
- 증상 확인되면 선별진료소 진료 시행(마스크 착용, 손위생),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 * 증상 확인 및 진료 결과에 따라 의사환자 분류 시, 자가격리 및 진단검사 시행
 - * 유학생일 경우, 관할 선별진료소 방문 및 「중국 유학생·교직원 관리안내」에 의해 학교 자체 시행 중인 격리조치 지속, 보건교육 실시(마스크 착용, 손씻기 철저)
 - * 확진시까지 증상이 경한 경우는 자가격리 유지,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1인실 입원치료 또는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
- 선별진료소 진료 받도록 관리하고, 실제 방문여부 및 진료결과 확인하여 보고

③ 일일 조치결과 보고

- 매일 17시까지 조치 결과를 "유증상자관리시스템"에 보고(입력)
 - * 각 유증상자별 선별진료소 방문여부, 의사환자 여부, 검사결과, 기타(연락불가능)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시 대응



□ 의사환자

1 의사환자 신고/보고

세부사항

주관

• 질병보건관리통합시스템 입력 - 비고란 의사환자 구분 작성

- 중국 방문력 확인
- 확진환자 접촉력 확인

(증상발생 14일전부터)

• 폐렴 증상 확인

최초 인지 기관

2 의사환자 역학조사

- 역학적 연관성 확인
- 의심증상 확인

(증상발생 14일전부터)

- 중국 방문력 검토
- 의사 · 확진환자 접촉여부 검토

국립검역소 시·도(중앙) 역학조사관 시·군·구 역학조사반

3 의사환자 관리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등 입원 및 격리조치
- 의사환자 사례분류
- 의사환자 이송(구급차)
- 의사환자 검체채취 및 의뢰
- 의사환자 병상 배정
- 역학조사, 검사의뢰 내용을 질병보건관리통합시스템에 입력

국립검역소 시·도(중앙) 역학조사관 시·군·구 역학조사반

의사환자 접촉자 조사

- 접촉자 범위설정 및 조사
- 접촉자 분류
- 검사결과 확인시까지 접촉자 관리 대기
- 접촉자 중 유증상자 인지시 선별진료소 방문 진료

국립검역소 시·도 역학조사관 시·군·구 역학조사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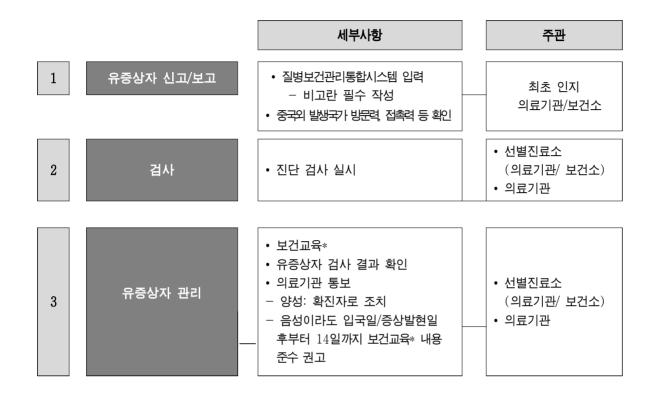
5 격리 해제

4

- 의사환자 최종검사 결과 확인 및 격리해제
- 의사화자 검사 결과 확인
- 의료기관 통보
- 검사결과, 능동감시 결과 등 잠복기(14일간) 관찰 후 격리해제 (격리해제기준 참고)

국립검역소 시·군·구 역학조사반

□ 조사 대상 유증상자



* 보건교육

- 외출 자제 및 타인과의 접촉 자제,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 대중교통 이용자제
- 호흡기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마스크 착용
- 개인위생을 위해 손씻기 강조, 기침예절 준수
-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국가 방문력 알리기
- 증상 악화 시 보건소 또는 1339로 우선 문의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시 단계별 대응 주체]

지원		0	0	0	검사비지원	검사비지원
해제	다.	유 타 다	선별 진료소	그라	선 진료소	하는
자가격리 통보	최초인지 보건소 (구두통보)	실거주지 관할보건소 (명령서)	최초인지 보건소 (구두동보)	실거주지 관할보건소 (명령서)		
검사 결과 전 환자 이송/ 설명	자차/도보/구급차 (남거소 119)	(설명) 선별진료소	자차/구급차 (보건소, 119) (설명) 선별진료소	자차/구급차 (보건소, 119) (설명) 의료기관	대중교통 자제 (설명) 선별진료소	대중교통 자제 (설명) 의료기관
검사	자체	수 투	자체	수. 주.	사 다 다	사 아마
검체 이송 주체	최초인지 보건소 or 선별진료소	선별 진료소	최초인지 보건소 or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최초인지 보건소 or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쨢	자가격리/ 과 사정 임원(료 명상 or 시도 지정 병원		야 21 11	10년 8 8	보건교육	
전 전 전 전 전 전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Ŭ.	원 전 년	전 전 라 소	급하	전 면 된 선	하는
김제 제취 주제	선별진료소	선별진료소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사 분류	ь	유지	시도	유도마	ï	Ť
유하 조사자	्रस्ते इस्त द	보건소	<u>써</u>	보건소	1	31
다	최초 인지 보건소	선별 진료소	보 건 산 산 산 수	일 기관	진 전 수 수 수	市市
파	선별진료소 보건소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보건소/ 의료기관)	일반	선별진료소 (보건소/ 의료기관)	일반 의료기관*
	94 (1,2)		94		서 수 수 수	公立

(설명) 진료 및 검사를 시행한 기관에서 검사결과 전 의사환자에 대한 이동방법, 보건교육 등 기초 안내 실시 *

1. 의사환자

- 가. 신고·보고
- 1) 의사환자 인지 상황
- (상황1) 검역단계에서 확인(검역 대응절차는 별도 절차에 따름)
- (상황2) 환자 자택 등에서 자발적 신고(1339 또는 보건소) 또는 자가격리 중 확인
- (상황3) 의료기관 신고(외래, 응급실, 입원실, 선별진료소(보건소포함) 등)
- 2) 감염병 의사환자 발생신고
- (의료기관/보건소) 내원한 환자가 의사환자의 기준(국외 방문력, 확진환자 접촉력, 임상 증상) 등을 확인하여 사례정의에 부합하는지 확인

☞ [서식 1] 감염병발생신고서

- (최초 인지 보건소)
 - 신고사례 인지 즉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감염병웹보고 신고여부 확인
 - 미신고 시 의료기관에 신고하도록 고지



- 신고서의 비고(특이사항)란에 의사환자의 구분을 넣도록 안내

[의사환자 구분]

- · 의사환자 1 : 중국 방문 후 유증상자
- · 의사환자 2 :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유증상자
- · 의사환자 3 : 의사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폐렴

나. 의사화자 발생시 대응 절차

의사환자 신고 접수 • 감염병 발생신고 □ 역학조사서 작성 • (최초인지 보건소) 역학조사서 작성 • (시·도 역학조사관) 의사환자 분류 의사환자 ② 의사환자일 경우 조치 2-2 접촉자 조사 및 관리 2-1 의사환자 관리 • (최초인지보건소) 증상 발생 1일전 • (선별진료소) 검체채취 및 의뢰, 이송 부터 접촉한 자 조사, 통보 및 관리 • (시·도 역학조사관) 관리방법 결정 • (시도) 접촉자 분류 : 자가격리/음압 또는 공공병원 격리 등 • (최초인지보건소) 검사결과 전 의사환자 • 단, 의사환자 1 중 중국 후베이성 방문 이동방법 안내 유증상자는 인지 즉시 : 자차/도보/구급차(보건소, 119) 국가격리치료병상으로 이송 • (최초인지보건소) 이송차량 소독 * 관내 검체채취가 불가능한 선별진료 • (최초인지보건소) 격리/입원통지(유선) 기관이 있으면 인접 또는 협력 • (실거주지관할보건소) 격리/입원통지서 발급 선별진료의료기관으로 이동 ③ 의사환자 검사 ④ 검사 음성일 경우 조치 검사(-) • (검체의뢰기관) 검사결과 입력 • (검체종류) 2종 (하기도·상기도) • (실거주지관할보건소) 후속조치 안내 • (검사기관) 의료기관 자체 또는 수탁검사기관 • 의사환자 1 (후베이성 제외)은 격리해제하나 입국일로부터 14일간 능동감시 유지 • 의사환자 1 중 후베이성 방문자는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입원치료 또는 자가격리 화자 • 의사환자 2는 접촉일로부터 14일간 격리유지 • 의사환자 3은 검사결과 최소 1회 이상 음성확인 후 의료진 판단에 따라 격리해제 5 환자일 경우 조치 5-1 확진환자 관리 접촉자 자가격리 해제 • (격리의료기관) 확진환자 격리 치료 및 관리 지속 등 • (실거주지관할보건소) 모니터링 해제 • (시·도) 임상경과 확인 및 긴급상황실 공유 등 전화 안내 • 환자의 접촉자는 검사결과 음성이라도 5-2 접촉자 역학조사 및 관리 14일간 격리 유지

<그림 2. 의사환자 신고 접수시 대응 흐름>

• 접촉자 중 의료인, 간병인, 동거가족

후 격리해제

기타 등은 13일째 검사결과 음성 확인

• (시·도) 접촉자 추가조사, 관리상황 점검 등

• (거주지관할보건소) 접촉자 자가격리, 일일

모니터링 등

- 1) 감염병 의사환자 역학조사
- (최초 인지 보건소)
 - 역학조사 후 기초 역학조사서 작성 (발열 확인 시 고막체온 측정) 및 질병보건통합 관리시스템에 입력
 -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역학조사-1급감염병-신종감염병증후군-기초역학조사서

☞ [서식 2] 기초역학조사서

- 필요시 선별진료의료기관으로 진료 의뢰 (가능한 경우 흉부 X선 촬영검사, 인플루엔자 신속검사 등 실시)

< 지자체별 선별진료소 활용 >

- ▶ (목적) 사례 신고 시 사례분류 등에 필요한 진료 의뢰
- ▶ (역할) 진료(체온측정, 임상증상 확인, 인플루엔자 신속검사 등), 검체 채취, 필요 시 처방 등
- ▶ (요건) 진료가 가능한 독립된 공간, 개인보호구
- **(시도 역학조사관)** 사례분류 및 조치 사항 확정
 - * 필요시 중앙역학조사관과 상의하여 사례분류 및 관리조치 결정 가능
 - 의사환자에 부합한 경우 검체채취 실시
 - 검체채취 후 검사결과 전까지 자가격리,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또는 공공병원 이송 등의 조치사항을 확정
 -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가 어렵다면, 가까운 의료기관 선별진료소로 방문받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이송
- 2) 검체채취 및 이송 □ Ⅵ. 실험실 검사 → 1. 검체 채취 및 3. 이송 참조
- 3) 의사환자 이송
- 검체 채취를 위한 진료기관 간 이동, 격리장소까지의 이동 등 수요발생 시 자차/도보/ 구급차(보건소, 119)로 이동

- * 보건소 또는 119 구급차 지원이 어려운 경우 (의사환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 ① 자차로 직접 운전하여 이동 가능
 - ② 도보 가능한 거리는 마스크 착용하고 이동 가능(접촉 최소화)
 - ③ 관용차(일반승용차) 지원 시 운전자는 N95마스크, 장갑 착용하고 이동 가능

2. 조사대상 유증상자

- 가. 신고·보고
- 1) 조사대상 유증상자 인지 상황
- (상황1) 검역단계에서 확인(검역 대응절차는 별도 절차에 따름)
- (상황2) 환자 자택 등에서 자발적 신고(1339 또는 보건소) 또는 자가격리 중 확인
- (상황3) 의료기관 신고(외래, 응급실, 입원실, 선별진료소(보건소포함) 등)
- 2) 유증상자 신고
- (의료기관) 내원한 환자가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기준(국외 방문력, 접촉력, 임상증상) 등을 확인하여 사례정의에 부합하는지 확인
 - ☞ [서식 1] 감염병발생신고서
- (최초 인지 보건소)
 - 사례 인지 즉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감염병웹보고 신고여부 확인



- 신고서의 비고(특이사항)란에 의사환자 선택 후 「조사대상 유증상자」 입력

[조사대상 유증상자 구분]

- · 조사대상 유증상자 1 : 중국 외 코로나19 발생 국가·지역 방문 후 유증상자
- · 조사대상 유증상자 2 : 의사소견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의심자

3. 의사환자의 조치

- 가. 자가격리 통지
- (최초 인지 보건소) 자가격리·검사 안내, 구두통보, 실거주지 관할보건소로 통보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격리통지서 및 생활수칙 안내문 교부
 - 의사환자는 자가격리 원칙*

(단, 중국 후베이성 방문 후 14일이내 유증상자는 인지 즉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이송 격리)

- * 경증이지만 자택 내 자가격리 불가(독립된 공간확보 또는 추가적인 보조 필요)한 경우 적절한 자가격 리 장소(시설 및 병원 격리) 제공 필요
- 역학조사관이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입원치료를 요하는 경우,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 또는 공공병원으로 시설 격리
- 검체를 채취한 후 자가격리 동안 준수해야 할 생활수칙 및 코로나19 검사 절차 안내

☞ 「서식 3〕자가격리통지서. 「부록 1, 2〕생활수칙 안내문 제공

나. 격리입원 안내

- (최초 인지 보건소) 인지 즉시 격리 및 입원검사가 필요한 경우
 - 입원치료 목적, 절차, 이송 등에 대한 설명 및 격리의료기관 안내
 - 코로나19 의사환자의 격리입원으로 항공권 취소 또는 변경 필요시 긴급상황실과 협의 후 조치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입원검사 안내 및 입원치료 통지
 - 의사환자의 경우 폐렴으로 입원중이거나 입원하여 검사가 필요하거나 입원치료가 필요 한 경우 입원치료를 통지
 - '입원치료 통지서' 배부

□ 「서식 4〕 입원치료 통지서

- * 이에 따른 입원치료비 및 격리비용은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 음압병상이나 1인실에 격리하며,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이면 해제

☞ Ⅴ. 음압병상 배정 및 이송 참조

- 다. 검사 시행 의료기관 입원
- 검사시행 병원에서 1인실 등 자체입원 격리실시 가능하며, 병원감염 관리조치 철저히 이행
 - 입원검사 안내* 및 입원치료 통지(입원치료 통지서(서식4))
 - * 입원검사 목적, 절차, 격리의료기관 등

4. 의사환자의 접촉자 조사

<증상발생 전>

<증상발생 후>

의사환자의 접촉자 (보건소) 접촉자 조사 (시·도) 명단 확정

보건소 또는 선별진료 의료기관 **진료**

- 가. 의사환자의 접촉자 조사
 - (담당자) 최초 인지(신고접수) 보건소
 - (접촉자 조사) 보건소에서 접촉자 조사 후 시·도 역학조사관이 접촉자 분류
 - 증상 발생 1일전부터 이동경로, 이동수단에 따라 접촉자(가족, 동거인, 의료진 등)를 조사하여 '접촉자 조사 양식'에 기록, 시·도 검토

☞ [서식 5] 접촉자 조사 양식

-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접촉자 관리 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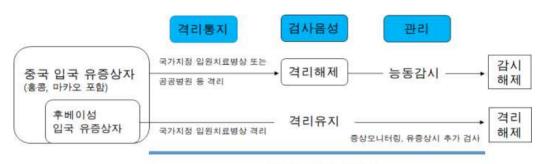
- 나. 의사환자의 접촉자 중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 (담당자) 최초 인지(신고접수) 보건소
 - 접촉자 중 유증상자 인지 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유선보고
 - 보건소가 환자 소재지를 방문하여 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게 함
 - 보건소에서 진료 * 선별진료의료기관 방문 시 접촉력을 알리고 진료

5. 의사환자의 격리해제

- 가. 격리해제
 - 격리해제 기준
 - (의사환자 1)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격리는 해제하나,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입국자

는 입국일로부터 14일간 능동감시 유지

· 단,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한 중국 후베이성 방문자는 검사결과 음성이라도 14일간 입원치료 또는 자가격리 유지



입국일로부터 14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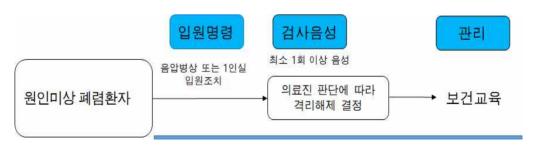
<그림 3. 의사환자 1 격리해제 및 감시 방안>

- (의사환자 2)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라도 14일간 격리 유지
 - · 즉, 퇴원하더라도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 유지



<그림 4. 의사환자 2 격리해제 및 감시 방안>

- (의사환자 3) 입원이 필요한 폐렴환자는 최소 1회 이상 음성 확인 후 의료진 판단에 따라 격리해제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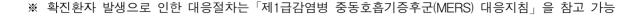
<그림 5. 의사환자 3 격리해제 및 감시 방안>

* 의사환자 3의 해제 기준은 코로나19 임상양상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밝혀지면 변동 가능함

- (격리해제 확인) 검사 결과 음성 확인 후 보건소는 환자 상태 및 격리해제 일정확인
 - (의료기관) 환자 격리해제 전 반드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알려 보건소에서 해제 통보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의사환자 분류 시 시·도 역학조사관과 확인한 격리해제 또는 검사 일정에 변경이 없을 경우 의사환자 격리해제, 시·도 역학조사관, 긴급상황실에 격리해제 보고
- (격리해제 또는 검사 일정 변경 시)
 - (의료기관) 검사횟수 및 격리해제에 관해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보건소와 협의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시·도 역학조사관에게 보고, 2차 검사 시행 여부 및 격리해제 여부 결정
- (격리해제 시 안내) 격리해제 후 잠복기 동안의 주의사항을 안내
 - (의료기관 및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코로나19 증상, 예방법, 잠복기 내 증상 발현 시 신고 등 안내, 능동감시 안내 실시
 - ☞ [부록 3] 코로나19 예방수칙

IV

확진환자 발생시 대응



1. 환자 이송 및 격리 치료

가. 확진환자 이송

- 검사기관으로부터 코로나19 검사 양성결과 통보 시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로 즉시 유선보고
- (담당자) 최초 인지 보건소 또는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 확진환자로 인지된 즉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최초 인지 보건소에서 실시하며, 거주지로 이 동 후 확진된 경우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실시
 - 입원검사 안내(치료 목적, 절차, 격리의료기관 등) 및 입원치료 통지

☞ [서식 4] 입원치료 통지서

○ (음압병상 배정) 관할 시·도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배정 요청

☞ Ⅴ. 음압병상 배정 및 이송 참조

나. 음압병상 입원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의료진은 개인보호구 착용 후 구급차로 이송된 확진환자를 인계받아 병실로 입원조치

다. 격리해제

- 격리해제 기준 : 증상이 모두 사라진 다음 48시간이 지나고, 호흡기검체* PCR 검사결과 24시 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일 경우 * 검체 종류는 임상상태에 따라 결정
- (격리해제 확인) 검사 결과 음성 확인 후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격리해제 일정 확인
 - (확진환자)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격리해제를 최종 결정*하고 시·도에 통보
 - * 환자 격리해제를 위해 의료기관과 협의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의료기관에 격리해제 결정사항 전달
 - * (의료기관 및 실거주지관할보건소) 의사환자 격리해제 시, 남은 잠복기 동안의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귀가조치(증상 악화 시 보건소 또는 1339 문의 안내)

2. 심층역학조사

- 가. 확진환자 심층역학조사 실시
 - 질병관리본부의 지휘 하에 시·도 및 시·군·구 역학조사반이 시행
 - 심층역학조사를 통해 감염원 및 감염경로 재확인
 -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방문지 및 상세 이동경로 파악
 - 추가 전파 가능 상황을 예측 확인하기 위해 접촉자 심층조사

나. 확진화자 접촉자 조사

- 질병관리본부의 지휘 하에 시·도 역학조사반이 시·군·구 역학조사반과 함께 조사 시행
- (접촉자 조사) 접촉자의 범위를 즉각대응팀 등이 결정
 - 확진환자와 접촉력이 있는 사람을 확인한 경우 → 시·도 역학조사반이 노출정도를 평가
 (확진환자 격리일로부터 14일까지) → 접촉자 범위에 해당할 경우 접촉자 관리 실시 →
 질병관리본부 즉각대응팀 연락담당자에 보고
 -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여부,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증상발생 1일전부터 접촉자 범위 설정

※ WHO 접촉자 예시

- 의료처치 관련 노출(보호복 착용여부 고려)
- 코로나19 환자와 근거리에서 함께 일을 하거나 환자의 학우(같은 교실)
- 코로나19 환자와 자동차, 기차, 비행기 등 각종 이동수단을 함께 이용한 경우
- 코로나19 환자의 동거인
- (명단 등록) 최초인지보건소에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에 접촉자 명단 입력 및 실거주지 관할보건소로 관리 이관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명단 등록시 주의사항

- 각 사례에 대해 관리정보-메모에 접촉한 확진자 번호, 접촉상황 설명 추가
- 접촉자 등록 시 꼭 '모니터링상태 및 시작, 종료', '격리상태 및 시작, 종료' 작성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서 자가격리통지서 발부 가능
- (접촉자 명단 통보) 최초인지보건소에서 접촉자가 있는 실거주지 관할보건소로 모니터링 대상자 이관 후 유선 통보

다. 확진환자 접촉자 관리

<확진환자의 접촉자 관리>

<증상발생 전>

<증상발생 후>

확진환자의 접촉자

(보건소) **자가격리(14일)**

→ 증상 발생 의사환자로 분류 및 검사^{*} 자가격리 지속 (중증일 경우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이송)

- * 진료 및 검체 채취시 자차. 도보. 구급차(보건소. 119)를 이용한 의사환자 이동
- **(조사담당)** 접촉자의 실거주지 관할보건소
- * 의료기관내 접촉자가 발생한 경우, 의료종사자는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서 감시관리 가능
- (관리방법)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
 - (자가격리) 의학적 처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아니면 자가격리(독립된 공간 확보가 어렵거나 추가적인 보조 등이 필요한 경우 접촉자 격리시설 또는 병원격리)를 원칙,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장은 접촉자에게 자가격리통지서* 발부
 - ☞ 「서식 3] 자가격리통지서. 「부록 1, 2] 생활수칙 안내문 제공
 - * 생활지원, 유급휴가 등 지원은 별도로 규정
 - (능동감시) 자가격리 해제 시까지 매일 2회 유선 연락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여부 확인
- 라. 확진환자 접촉자 중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 '2. 의사환자인 경우 조치'에 따름
- 마. 접촉자 모니터링 해제
 -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동안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 지속 후 해제
 - * (예시) 최종접촉일(4.1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4.16일 00시 해제
 - * 확진환자 접촉자가 확진검사를 시행하여 '음성'으로 확인되더라도, 기존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는 14일간 지속
 - (모니터링 해제 통보) 접촉자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통보 및 질병보건통합관리시 스템 내 '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에서 접촉자 모니터링 해제 조치
 - * 모니터링 해제 시 반드시 접촉자관리-상세보기에 '모니터링 안함', '격리해제', '격리종료' 기입

3. 방역조치

가. 법적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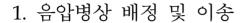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나. 조치 내용

-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조치
 - 일시적 폐쇄
 -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 감염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사용·접수·이동하거나 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하는 것
-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것
- 다. 관련 규정에 따른 방역조치(일시적 폐쇄, 출입금지, 이동제한, 의료기관 업무 정지, 소독 등) 시 [서식6], [서식7] 배부
 - ※ 소독 명령서 배부 시 관련 공무원은 소독 실시 시간과 종료 시간을 구체적으로 기재
 - ☞ [서식 6] 방역조치 관련 서식, [서식 7] 소독증명서

V

음압병상 배정 및 이송



- (담당자) 최초 인지 보건소 담당자
- (음압병상 배정) 관할 시·도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우선 활용) 또는 지역별 거점병원음압병상 배정 요청*
 - * 군인(현역 장병 등)이 인천, 서울, 경기도 권역에서 의사환자로 분류된 경우
 -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1688-5119, 031-725-5119)로 연락하여 **국군수도병원**(군 지정 격리병상)으로 병상 배정 및 격리입원 조치
 - 질병관리본부와 국군수도병원은 정보 공유, 상황 전파 등 긴밀한 업무 협조

○ (이송조치)

- 배정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또는 지역별 거점병원 음압병상으로 이송*
- 이송 시 의사(확진)환자는 **수술용 마스크 착용** 유지
- 이송요원은 적절한 보호구* 착용

☞ [부록 4] 코로나19 관련 개인보호구의 사용 참조

- * 이송요원 : 전신보호복(덧신포함), N95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장갑, 보안경(또는 안면보호구)
- 구급차 운전자는 개인보호구*(N95 동급의 호흡기보호구와 장갑) 착용
- * 단, 구급차 운전석이 차폐되어 있지 않거나 의사환자 및 환자 접촉의 기회가 있을 경우 반드시 전신보호 복(덧신포함), N95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장갑(필요 시 보안경 또는 안면보호구 추가) 착용

2. 음압병상 입원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의료진은 개인보호구 착용 후 구급차로 이송된 의사(확진)환자를 구급차로부터 인계받아 병실로 입원조치

3. 기타

- (이송수단 등 환경소독) 의사환자를 이송한 구급차는 적절한 소독제로 소독*
 - ☞ [부록 5]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요약) 참조
 - 의사환자가 사용한 물품은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가급적 사용하지 않으며, 눈에 띄는 오염물(구토물 등)은 적절한 소독제로 소독
 - * 가정에서 의사환자가 사용한 물품은 검사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사용하지 않도록 함
- (폐기물 처리) 탈의한 개인보호복은 정해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담아 폐기
 - ☞ [부록 6] 코로나19 폐기물 관리 참조

\mathbf{V}

실험실 검사 관리



1. 검체 채취

가. 채취장소

- (채취 장소) 선별진료소 또는 의료기관 내 다른 공간과 격리된 검체 채취 공간
 - * 단, 자가격리일 경우 격리장소에 따라 채취장소 변동 가능성 있음

나. 검체종류 및 포장

- (검체종류) 하기도(가래) 1개 및 상기도(구·비인두 도말 혼합) 검체 1개
- * 단, 확진환자의 경우 최초 양성판정 이후 및 격리해제 이전에 추가 검체(혈액) 채취 (가능할 경우 대변, 소변 채취)
- ※ 출처, CDC, 2019 Novel Coronavirus, Wuhan, China, Guidelines for Clinicl Specimens, 2020.1.17. ver.

표1. 코로나19 확인검사를 위한 검체 종류

번호	검체 종류		루 용기 및 용량	
1	하기도 ·가래		·(용기) 멸균 50ml 튜브 ·(검체량) 3ml 이상	
2	상기도 ·구인두도말물 ·비인두도말물		·(용기) 하나의 VTM 배지에 비인두와 구인두 도말물 동시 채취	
3	기타	·혈액 ·대변 / 소변	·(용기) SST 5~10ml, 영아의 경우 1ml) ·(용기) 멸균용기	

(필수 검체) 하기도 및 상기도, (선택 검체) 혈액 등 기타 검체

- (하기도 검체) 환자 스스로 구강 내를 깨끗한 물로 세척한 후, 멸균용기(가래통 등)에 타액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깊이 기침하여 채취
- * 가래 채취가 불가능하여 침이 채취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불가능할 경우 생략 가능
- * 검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수송 시 누출되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3중 포장)







2. 무균용기 사용



3. 기침하여 가래 채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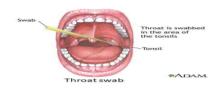
4. 완전 밀봉 (4℃ 유지)

<그림 7. 가래 채취 방법>

- (상기도 검체) 상기도 검체는 비인두도말물과 구인두도말물을 동시에 채취하여 하나의 바이러스용 수송배지에 담아 검체시험의뢰서(서식 8)와 함께 수송
- * 단, 확진환자의 경우 최초 양성판정 이후 및 격리해제 이전에 추가 검체(혈액 SST $5{\sim}10\mathrm{ml}$, 영아의 경우 $1\mathrm{ml}$) 채취 및 가능할 경우 대변, 소변 채취
 - · 비인두도말물(Nasopharyngeal swab) : 콧구멍을 지나 입천장과 평행한 각도로 면봉을 밀어넣고 하비갑개 중하부에서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 하비갑개 중하부에서 몇 초 간 분비물을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을 두도록 하여 채취
 - · 구인두도말물(Oropharyngeal swab) : 혀를 누르고 인두후벽에서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

〈구인두도말물 채취 방법〉

〈비인두도말물 채취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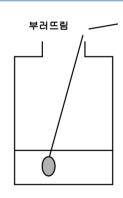




출처: ADAM, 인플루엔자, 신종인플루엔자 범 부처 사업단(TEPIK)

<그림 8. 상기도 채취 방법>

- •검체 용기 보관 방법
- 수송배지가 담긴 병에 도말한 면봉을 담그고 병마개 부위에서 면봉을 부러뜨린 후 뚜껑을 단단히 잠그도록 함
- 부러뜨릴 때 안쪽에 손이 닿아 오염되지 않게 주의
- 검체가 담긴 병은 즉시 냉장고(4℃)에 보관
- 검체채취 후 반드시 채취용기에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연령) 및 채취일을 기입
- ●검사의뢰서를 작성하여 검체와 함께 의뢰(4℃ 유지)



○ 검체포장

- 채취된 검체가 포함된 1차 용기를 소독처리(70% ethanol)한 후 라벨 작성
- * 병원명, 검체종류, 채취일, 환자명, 성별, 나이 등의 정보 표시
- 소독 처리된 1차 용기를 흡수제(종이타올 등)로 감싼 후 2차 용기에 넣음
- 2차 용기의 뚜껑을 단단히 잠근 후 3차 용기에 넣음
- 검체 시험의뢰서를 3차 용기 뚜껑 사이에 넣은 후 포장
- 3차 수송용기 겉면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응급상황 시 연락처를 기재

- 3차 수송용기를 아이스박스에 넣은 후 냉매제(아이스팩)를 용기 주변 4면에 삽입
- 포장된 아이스박스의 겉면에 감염성 물질 표식, UN 3373 표식, 방향 표식,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응급상황 시 연락처 등을 기재

표2. 3중 포장용기 예시

구 분	1차 용기	2차 용기	3차 용기
포장용기			# 60% \$100 mg

다. 주의 사항

○ (주의 사항) 검체 채취 시, N95 또는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일회용 장갑, 일회용 긴팔 가운 또는 전신보호복,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등의 개인보호구를 필수적으로 착용 및 검체 채취 후 소독 필수

2. 검사 의뢰

-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검사가 가능한 기관은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검사가 불가능한 기관은 수탁검사기관으로 검사 의뢰
- **(보건소 선별진료소)** 수탁검사기관으로 검사 의뢰
 - * 수탁검사기관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의뢰 가능
- ☞ [서식 8] 검체시험의뢰서 서식

3. 검체 운송

- 가. 검체운송 담당
 - (민간 의료기관 검사할 경우) 자체 검사 가능한 경우 운송 불필요, 수탁검사기관으로 운송은 해당 검사기관 운송체계에 따라 운송
 - (보건환경연구원 검사할 경우) 환자 최초인지 보건소 담당자가 관할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송
 - * 검체 운송 담당자는 N95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장갑 착용하고, 검체의 종류, 채취시간, 이송시간 정보를 확인하여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과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상황보고

- 나. 검체 운송 중 보관 조건
 - 바이러스 분리 및 유전자 검사용 검체 : 4℃를 유지하여 즉시 수송
 - * 72시간 내 운송 불가능한 경우 -80℃에 보관 후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해 수송
- 다. 검체 운송 시 유의사항
 - 의심검체 수송 담당 지정
 - 감염성물질안전수송지침(질병관리본부) 준수
 - (수송 차량 선정 및 비치) 포장된 검체를 자가운전 차량(또는 지정차량) 트렁크에 비 치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고, 수송차량 내부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적절한 개인보호구와 오염처리 장비(스필 키트), 소독제, 삼각대 등을 준비
 - (이동 경로 선정 및 주의사항) 최단거리 및 안전한 경로를 지정하여 기관 책임자에게 보고 후 출발하고, 미리 정해진 이동 경로로만 이동(휴게소 이용 시 정지된 차량에 필수 인원 잔류)하고 이동 중 방어 운전과 도로교통 신호 및 규칙 준수

4. 검사 시행

- 가. (검사기관) 의사환자 검체 대상 유전자 검사 시행
- 나. (보건환경연구원) 환자(의사환자)가 아닌 경우로써, 감염원 원인규명을 위하여 역학조사 과정 중 제한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민간의료기관에서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야간 응급환자 발생)에 한하여 검사
 - * 환자 최초 인지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 및 관할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의뢰
 - ※ 검사결과, 미결정의 경우 중앙방역대책본부(검사분석팀)에서 잔여 검체 재검사 후 최종 결과 판정(필요시 검체 재채취)

5. 검사 결과 보고

- 가. (검사기관) 검사기관에서는 의사환자를 신고한 보건소로 검사결과 통보 및 제출
 - 보건소는「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환자감시 메뉴에 결과 입력·보고
 - 검사결과는 의료기관의 담당 의료진을 통해 환자에게 통보 및 설명
 - ! 단. 양성의 경우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과 최초 인지 보건소로 즉시 유선 통보
- 나.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결과 입력・보고
 - ! 단, 양성의 경우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과 최초 인지 보건소로 즉시 유선 통보

Ⅵ 환경관리

1. 소독의 일반 원칙

- 소독제는 환경부 등의 허가를 득한 제품를 사용
 - * 소독제가 없으면 차아염소산나트륨(예: 가정용 락스), 70% 알콜 사용
- 소독제 제품설명서 또는 제조사 권고사항* 준수
 - * 소독제 희석방법, 소독시간, 보관방법, 유효기간 등
- 환경 소독 전 방수용 장갑, 마스크, 앞치마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
- 외부 공기가 실내로 순환되도록 충분히 환기(소독 중, 소독 후)
- 혈액 등 잔존유기물에 의해 소독효과가 감소되지 않도록 소독 전 유기물 제거
- 소독 후에는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
- 소독제에 따라 희석액 조제 및 사용 후에는 소독 효과가 감소 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만큼만 희석하여 사용(잔량은 보관하지 말고 폐기)
- 소독액은 가연성 물질에 가까이 두지 말고 사용 후에는 소독 효과가 떨어지므로 보관 하지 말고 버릴 것

※ 참고: 차아염소산나트륨 소독액* 희석배율

* 시판되는 차아염소산나트륨 소독제 원액의 유효염소 농도에 따른 희석 배율 및 염소 농도

유효염소농도	차아염소산나트륨	차아염소산나트륨:물 혼합 배율		
(ppm)	농도(%)	4% (40,000ppm) 원액	5% (50,000ppm) 원액	
100 ppm	0.01%	1:400	1:500	
500 ppm	0.05%	1:80	1:100	
1,000 ppm	0.1%	1:40	1:50	
5,000 ppm	0.5%	1:8	1:10	

※ 환자 발생시 소독방법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소독지침(초판)」 참조

2. 소독 조치

가. 소독 명령

- 법적 근거
 - (법 제47조)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 (법 제49조)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을 명하는 것
 -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오염된 장소의 장이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소독시행 명령 통지(서식 6)
- 지자체(보건소)에서 오염된 시설 또는 장소 등에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소독명령서 서식(서식 6)을 준용하여 소독을 한 장소,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소독을 실 시한 시설의 관리·운영자에게 발급

나. 소독이행

- 소독명령을 받은 오염된 장소의 장이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부록 5 「별표 6호 소독 방법」에 따라야 함
 - * 보건소장은 필요한 경우 소독실시를 지도 · 감독할 수 있음

다. 소독이행 여부 등 확인

- 소독명령을 받은 오염된 장소의 장이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소독업무대생자는 소독 시실 전에 소독 실시 계획서 제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독업무대행자의 자격 기준의 유지와 소독 등 업무수행에 관하여 법률 제23호서식에 따른 소독업무 대행업체(자)지도·점검표에 따라 지도·점검
- 소독실시 확인 또는 소독업무대행자의 자격기준의 유지와 소독 등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한 결과 자격 기준이 적합하지 않거나 소독 등 업무수행을 소홀히 한 경

- 우 그 영업을 관할하는 시 · 도(시군구)에 해당 사실 통보
- 소독명령을 받은 오염된 장소의 장이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소독업무 대행자는 소 독 완료 시 소독 결과 보고서 제출
 - * 소독을 실시한 소독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준하는 소독증명서를 소독을 실시한 시설의 관리·운영 자에게 발급
- 보건소장은 소독 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소독기준 미준수 등으로 재소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소독기준에 따라 다시 소독할 것을 명령 할 수 있음
- 라. 소독업무대행자의 자격요건은 법 제15조제3항, 제27조제1항 또는 제28조제5항에 따라 소독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 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람임
 - ☞ [서식 6] 방역조치 관련 서식, [서식 7] 소독증명서

< 서 식 >

1. 감염병 발생 신고서	34
2. 기초역학조사서(보건소용)	36
3. 격리통지서 (한글/영문)	37
4. 입원치료 통지서	38
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접촉자 조사양식	40
6. 방역조치 관련 서식	41
7. 소독증명서	42
8. 검체시험의뢰서 서식	43

감염병발생신고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19. 11. 22.>

감염병 발생 신고서

※ 뒤쪽의 신고방법 및 작성방법에 관한 안내를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수신자:	[]질병관리본부장 []		보건소장	<u> </u> -					
[환자의 역	 인적사항]								
성명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만 19세 여	기하인 경우 보호자 성명)	성별 []님	ㅏ []여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u> </u>						
주소									
[]거주지	불명 []신원 미상	직업							
[감염병명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9	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일	∄ [[]두창		[]페스트				
제1급	[]단저 []보툴리눔독소	는증 [[]야토병						
MILE	[]신종감염병증후군(증상 및 징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	토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지	; 	[]디프테	리아			
	[]수두(水痘) []홍역(紅疫)	[[]콜레라		[]장티푸:	<u>^</u>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百日	咳) [[]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제2급	[]풍진(風疹, []선천성 풍진 []후천성 등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			균 감염증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	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니	배성황색포도알	·균(VRSA)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파상풍(破傷風) []B형간염	-	[]일본뇌염		[]C형간염				
	[]]메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 ⁻				
	[]발진열(發疹熱)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리	라증			
제3급	[]공수병(恐水病) []신증후군출혈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								
	[]황열 []뎅기열	[]큐얼(Q熱) []웨스트나일일							
	[]라임병 []진드기매개노		[]유비저(類鼻疽) []치쿤구니야일			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u> </u>	[]지카바이러스	<u> </u>					
[감염병 빌						01 01			
발병일	년 월 일 진단일	년 1	월 일 선	''고일	년	월 일			
확진검사결	과 []양성 []음성 []검사 진행중 []검	사 미실시	입원여부	[]외래	[]입원 []그 밖의 경우			
환자 등 분	류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그 밖의 경	병우						
비고(특이/	사항)								
사망여부	[]생존 []사망								
[신고의료기	기관 등]								
요양기관번	호		요양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진단 의사	-		신고기관장 성명						
[보건소 보									
국적(외국(인만 해당합니다)								
환자의 소		자의 소속기관	주소						
추정 감염	· · · · ·								
	[]국외(국가명: / 체류기간:	~	/ 입국일	: 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신고방법

- 1.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린 후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신고한 감염병환자 중 확진검사결과 또는 환자 등 분류정보가 변경되거나 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반드시 그 결과를 변경하여 신고하거나 관할 보건소로 통보해야 합니다.
- 2. 감염병에 따라 환자상태 및 감염병 원인 파악을 위한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3. 감염병 발생을 신고하기 전에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감염병 발생 신고서와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를 모두 작성하여 신고해야 하며, 감염병 발생을 신고한 후에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만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 4. 제2급감염병 중 결핵은 「결핵예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3급감염병 중 후천성면역결핍증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발생 및 사망을 신고합니다.
- 5. 제4급감염병(표본감시대상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표본감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보건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는 별도의 서식으로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6. 팩스 또는 정보시스템[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내 감염병웹신고]을 통해 신고합니다.
- 7. 관할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신고 받은 보건소에서는 환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이전 보고합니다.

작성방법

[수신자] 해당되는 수신자에 √표하고, 수신자가 보건소장인 경우에는 빈칸에 보건소의 관할 지역을 적습니다.

[환자의 인적사항]

- (1) 성명: 만 19세 이하인 경우에는 환자의 성명과 보호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외국인의 경우에는 영문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 (2)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적습니다(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감염병명] 해당하는 감염병명에 √ 표를 하며, 제1급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그 증상 및 징후를 적습니다.

[감염병 발생정보]

- (1) 발병일: 환자의 증상이 시작된 날짜를 적습니다(병원체보유자의 경우에는 발병일이 없으므로 "0000-00-00"을 적습니다).
- (2) 진단일: 신고의료기관 등에서 해당 감염병으로 처음 진단한 날짜를 적습니다.
- (3) 신고일: 신고의료기관 등에서 관할 보건소로 처음 신고한 날짜를 적습니다(팩스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팩스 송신일을, 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입력일을 적습니다).
- (4) 확진검사결과: 질병관리본부장이 고시한 「감염병의 진단기준」을 참고하여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5) 환자 등 분류: 검사결과 해당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밖의 경우"란에 √표를 합니다.
- (6) 사망여부: 감염병환자등이 사망한 경우 "사망"란에 √표를 하며,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를 함께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신고의료기관 등]

- (1) 신고인이 의료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는 요양기관 정보, 감염병을 진단한 의사의 성명 및 의료기관장의 성명을 적고, 신고인이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인이 소속된 기관의 주소·전화번호와 감염병을 진단한 의사의 성명 및 소속기관장의 성명을 적습니다.
- (2)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요양기관검색" 버튼을 이용하여 해당 기관을 선택하면 요양기관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고기관장 성명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보건소 보고정보]

- (1) 환자의 소속기관명 및 주소: 환자가 소속된 직장(사업장), 학교(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포함합니다) 및 군부대 등의 기관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 (2) 국적: 외국인의 경우에만 본인의 국적을 적습니다.
- (3) 추정 감염지역: 국외 체류 중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국외"란에 √표를 하고, 국가명(체류국가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감염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명을 적습니다), 체류기간 및 입국일자를 적습니다.

기초역학조사서(보건소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역학조사서										
조사자	소속		연락처		01 6		인지경.		1339,	보건스	Ξ,
	성명		조사일시	년_	_월일	<u> 실</u> _시	(기관)	의료	기관)		
1. 조사디	내상자 인	l적사항									
1.1 성명			1.2 주	민 등록 번호			-	1.3 성팀	i () 남	○ 여
1.4 국적		○국내 ○국외 () 1.5 거	주지 주소							
1.6 연락처(보호자)	_	- 1.7 직	업 (직장명,	학교명)						
2. 발생지	I역 여호	백력 (해당사항0	세 ☑표시 또는 기	기재)							
2.1 방문 여			○ 방문하지 않음	· · · ·							
2.2 출국 일		년	월	일	시						
0.0 =17.440	.l ¬ l	국가명:	도시명: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2.3 최근 14일 방문 지역		국가명:	도시명: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국가명:	도시명: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2.4 입국시 경	결유	○ 예 ○ ०									
2.4.1 입국	시 경유지	국가명:	도시명:	. /==!	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OF HLD D	T-		입 여부 : ○ 출입함 ○ 업무(출장)	함(목석: ○ 해오	170		밖 체류시			출입안	<u>각</u>
2.5 방문 목 2.6 동반자	씍		<u> </u>		-	○ 해외 2 =) (도해 2		○ 기타명)	()
2.0 804			시장 방문	M 8 (21 A	, нт () (08) 방문일:	` 년		일, 장소	•	
			가금류(닭,오리	등) 밀 야	생동묵						
			취 및 접촉	0, 2 1	OOE	접촉일:	년	월	일, 장소	:	
2.7 김염위험	_	중국의 🗆	급성호흡기증성		기침,	접촉일:	녀	월	일		
(발병일로부터 14	4일 이내)	지역에서	폐렴 등)와의 현지의료기관 병				년	_	드 일, 방문	110.	
			현시의묘기관 등 해당 없음	강正		접촉일:	닌	결	일, 방군	^fm·	
			-113 BA B 환자 접촉 (접촉)	날짜 및 징	소:	,) () 해당 없	음	
2.8 입국 일	시	년	월	일	시	항공편	<u> </u>)		
2 01사-	⋸⋏ ⊦ /≞⊪⊏	사항에 ☑표시 또	· - - - - - - -								
3.1 최초증성			- 기세 <i>)</i> -) □기침 □가	ᆲᄆᅘ	. □ ⊐ 9	토 □이형	호토 □	ㅎ흐고라	□7lFL/)
3.1.1 발현		년		의 그 소인		시 시	ro U.	오담드킨			
3.1.2 발현							<u>`</u> :) 0	기타()
3.1.3 확인			의료인 () 보건			역소 담당	자 ())
			기관명()	확인역	일시 ()	
3.2 현재 증성	ᅪ	□ 발열(°(□ 호흡곤란	C) □기침 □ □기타(가래 🗆 🖺	오한 🗆	근육통] 인후통	<u>:</u>			
3.3 해열제 특	로용여부	○ 예 (복용시간		시간)	○ 아니	<i>)</i> 기오	34 후	연여부	(예	\cap (아니오
3.5 기저 질환		○ 예 (기저질) 아니오	0 4	' 3.6 임신			<u> </u>		1 1도 아니오
3.7 의료기관		□폐렴□급성	성호흡곤란증후군	· □기타	<u>i</u>)			
3./ 의표기전	인민	□ 흉부방사선쵥	발영 : O 예 (소·	견 :)	○ 아니	오	
					○ 예()		7	 족(명)
4.1.	입국시 건	강상태질문서에 증	상 기재		○ 아 니:	,			. I. 료진(명)
확인사항 4.2 ((의료기관)	DUR /수진자조회시	스템 상 여행력 획	확인	(예	○ 아니오	4.4 접·	774:	장(이/		명)
100	이구 ㅎ 12	 39 신고 안내 문지	ᇤᄱᆡᅱᄼᄾ			 () 아니오			! 외(·도와 접촉자	범위 및	명) 명단을 확정하여
4.3	日十千 13	39 선포 현대 군사	메시시 구선		<u> </u>			최	종명단 작성 :	및 보유(서	식4)
시도역학	조시바	자서라									
			○조사대상유증 ₂	산자 ○ 시	네 '미해						
시케브로		() 중국 방문 (0~1 \(\) \(\)	1-11 - 1011	0		○폐림	를 () 빌	열+ <u></u> 호흔	휘증상
사례 분류		역의식 (○ 확진환자 접촉	_ ,	,	임	상증상	○ 발일	ਭ <u>ੇ</u> ਭ	흡기증	
H7JA	= L/=) 중국외 지역방원)	3 01 0		O 기타)
보건소 조치사		○ 국가시성	입원치료병상 등	5(·		○ 자가		보건교육	-	
담당 역학조사	쓴				사례분	구 일시		년	월	일	시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성 명		생년월일					
격리 구분	격리 기간						
다 구군 □ 자가 □ 시설 □ 병원		격리 장소					
	격리 장소	주소					

귀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 또는 동법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격리대상'임을 통지합니다.

※ 본 통지에 따르지 않을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4호 또는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202 년 월 일

OOO 보건소장

(관인생략)

	Noti	ce of Is	olation/Quara	antine					
Name			Date of Birth						
	Duration	effective fro	om	to					
.		[] Other fa	ce(including home) acilities						
Type of	Place	Address							
be sel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notifies you that you should be self-quarantined for requested period of time according to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49.1.14 or 41.3.2								
million-v	If you do not comply with this notice, you will be fined up to 3 million-won based on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Act, Article 80.4 or 80.7								
Year/Month/Date://									

Mayor \cdot Governor of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or Mayor \cdot Governor \cdot Head of district office[gu], Head of medical institution

입원치료 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입원치료 통지서

성명				주민등록	루번호			
	입원일							
이의원로	입원기간							
입원치료	입원치료 장소		[]병으	원	[]자택]]시설	
		주소						

위 사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라 입원 및 치료가 필요하여 입원치료됨을 통지합니다.

※ 입원치료에 따르지 않으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4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의료기관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접촉자 조사 양식

순번	접촉자명	생년월일	성별	<u></u>	상세주소	접취관	격리구분	내국인	국적	핸드폰	연락처	작업 작정명 (학교명)	र्वेडवर्वेश	의환 부
	띄어쓰 기 금지	생년월일 년도(4자리) 월(2자리) 일(2자리) 등록 숫자만 입력 (예시 : 20160905)	1:남 2:여	주소를 기준으로 시도 시군구 코드를 수기로 선택 매칭		01[의료진] 02[의료진 기타] 03[환자] 04[가족] 05[동료] 06[기타]	1[격리안함] 2[격리해제] 3[자가격리] 4[병원격리] 5[코호트 격리]	Y : 내국인 N : 외국인 반드시 국적 입력	내국인 항목 'N' 선택 시 텍스트 입력	숫자만 입력	숫자만 입력	텍스트 입력	숫자만 입력	Y : 예 N : 아니오
1	<u>\$</u> 00	19710101	1[남자]	서울 마포 상수동	111-11	1[의료진]	3[자가격리]	Υ		0101234 1234	0212341 234	OO병원	20150630	Y
2	<u>\$</u> 00	19710102	1[남자]	서울 마포 상수동	111-11	4[가족]	3[자가격리]	Y		0101234 1234	0212341 234	00학교	20150630	N
3	MOO	20010101	1[남자]	서울 마포 상수동	111-11	2[의료진 기타]	3[자가격리]	N	줅	0101234 1234	0212341 234	OO기업	20150630	N
4	<u>\$</u> 00	20010103	1[남자]	서울 마포 상수동	111-11	4[가족]	3[자가격리]	Y		0101234 1234	0212341 234	무직	20150630	N

^{*} 반드시 본 양식대로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 → 환자관리 → 접촉자관리 → 접촉자관리 → 등록(엑셀)로 등록

^{* &#}x27;보건소 의견' 란에 주민등록번호, 접촉한 확진환자 번호, 확진자와의 접촉장소 기재

방역조치 관련 서식

일시적 폐쇄 □ 출입금지 □ 이동제한 □ 의료기관 업무정지 □ 소독 □ 명령서									
해당 시설	명칭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성명 주소				병년월일 선화번호				
(=11)	1 —		명령의 구분			이행기간			
명령의 내용	일시적 폐쇄	출입금지	이동제한	의료기관 업무정지	소독	2020			
						00:00 ~2020 00:00			
명령대상	범위		시설 전체	(t	시설 범위 한정 시 구체	설 일부 적으로 기재)			
준수사항	이후 장소 시	·용 가능 바이러스는 소 독			,	지 사용을 금지하고 가능성 등을 함께 고			
	, 제5호(소독)	_				비동제한), 제2호(의 한∙의료기관 업무			
		202	20년 월	일					
○○○ 보건소장 (관인생략)									
			유의사항						
	무정지·소독	명령을 위법				占금지·이동제한 7호에 따라 300			

소독 증명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제	호 							
	소 독 증 명	서						
	상호(명칭) 실.	시 면적(용적)	m² (m³)					
대상 시설	소재지							
10.115	관리(운영)자 직위							
	확인 성명		(인)					
소독기간	~							
	종류							
소독 내용	약품 사용 내용							
	기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제 따라 위와 같이 소독을 실시하였음을 경		시행규칙 제					
		년	월 일					
소독 실시자 상호(명칭) 소재지 성명(대표자)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검체시험의뢰서 서식

- ※ 해당 서식은 질병관리본부로 의뢰하는 경우에 대한 서식으로, 관할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 의뢰시, 해당기관의 서식에 맞추어 작성 및 의뢰 필요
-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9. 8. 23.>

						처리기간					
	()	검체 /	니험의로	리서		「질병관리 관한 고시」 참고히		른 🧦	터리	기간을	
	이크리기머				담당자 성명						
의뢰기관	의료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1.1.1	주 소			·		(전화번호 (팩스번호)	
환자	성 명 (또는 관리번호)				생년월일			성	豊		
	발병일				검체채취일						
검체	종류(수량)										
시	험항목										
	검체 채취 구분 (1차 또는 2차)										
담당의사소견	서										
	담당의사 : (서명 또는 인)										
「질병관리	미본부 시험의뢰규칙	」 제4조에 따	라 위와 같이	시험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	뢰기관의 장	[인]				
질병관리	본부장 귀하										
※ 첨부자료											
1. 검사대상	<mark>상물</mark> 시험에 필요한 자료										
2. 그 뒤에	시험에 필요한 사로	<u> </u>									
				유의사	항						
2. 의뢰기관 3. 후천성만	은 「의료법」에 따른 반의 전화번호는 결과 변역결핍증(AIDS)의 류(수량)란에는 검체:	사회신이 가능한 경우, 환자의	· 번호로 기지 성명 대신 관	대하여 주 관리번호	시기 바랍니다. 를 기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H)]				
				-1-1 7	=1						
			,	처리 절	자						
의뢰서 직	→	접수	→ \	험・검	→	결재	→	성적	서	발급	
의뢰인				질	병관리본부(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부 록 〉

1.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45
2.	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 및 동거인을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46
3.	코로나19 예방수칙	- 47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개인보호구의 사용	48
5.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요약)	- 55
6.	코로나19 폐기물 관리	- 58
7.	자가 격리의 생활폐기물 관리·처리 매뉴얼	63
8.	자주묻는질문	64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이 안내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 기 위해 '자가격리' 하는 분에게 제공됩니다.

다음의 생활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전파되지 않도록 귀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가격리대상자 준수사항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바깥 외출이 금지됩니다.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세요.
 - 방문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식사는 혼자서 하세요.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사용하세요.
 - ※ 공용 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보건소에 먼저 연락을 하여야 합니다.
-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 불가피한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서로 마스크를 쓰고 2m이상의 거리를 둡니다.
-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으로 사용하세요.
 -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세탁
 -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건강 수칙을 지켜주세요.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세요.
 - 기침이 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마스크가 없다면 소매로 가려 기침하며, 기침, 재채기 후 손을 씻거나 손소독 합니다.
- 능동감시 기간동안 관할 보건소가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귀하의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아래의 방법으로 자가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가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나요?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를 체크합니다.
 - 보건소에서 하루에 1회 이상 연락드리며, 이때 감염 증상을 알려주십시오.
-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나요?
 - 발열(37.5 ℃ 이상),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폐렴이 주요 증상입니다.

증상이	발생하거나	심해질 경약	우 먼:	저 관할보	건소와 상의하시거니	•
질병관	리본부 콜선	터(국번없이		1339)로	알려주십시오.	

※ 담당보건소:	담당자:	긴급연락처:	
_			

자기격리대상자의 기족 및 동거인을 위한 생활수칙 앤내문

이 안내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 하는 분의 가족 또는 동거인에게 제공됩니**다.

다음의 생활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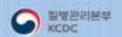
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 또는 동거인 준수사항

- 가족 또는 동거인은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접촉을 금기합니다.
 - 외부인의 방문도 제한합니다.
- 자가격리대상자와 **불가피하게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서로 2m이상의 거리를 둡니다.
- 자가격리대상자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시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를 시키십시오.
-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손을 자주 씻으십시오.
- 자가격리대상자와 생활용품을 구분하여 사용하세요.(식기, 물컵, 수건, 침구 등)
 - 자가격리대상자의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세탁
 - 자가격리대상자의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테이블 위, 문손잡이, 욕실기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 을 자주 닦아주세요.
- 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 자가격리대상자가 증상이 발	생하거나 심해질 경	우 먼저 관할보건소와	상의하시거나	질병관
리본부 콜센터(국번없이	🕿 1339)로 알려	두십시오.		
※ 담당보건소:	담당자:	긴급연락처:		_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증상: 발열(37.5 ℃ 이상).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폐렴

코로나19 예방 수칙







0 신종교로내비에건스킨

감염병 예방 수칙



손바닥, 손톱 밑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가리기!



기침 등 호흡기증상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의료기관 방문 시 필수)



선별진료소*(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잔에게 해외여행력 알리기

"선물전로소 현목 등생라리본부 홈페이지 되는. 관람보건는 있는 지역원중+120, 1118 문제



감염병이 의심될 땐 관합보건소 또는 1339, 지역번호+120 상담

중국 여행 시 주의사항



동물 접촉 공지



현지 시장 및 의료기관 방문 자제



발열, 호흡기증상자(기대, 인후유 등) 접촉 금지



· 기침시 마스크 착용 · 손씻기, 가침에질 등 개인위성 수칙 준수



- · 중국 여행 후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 · 귀국 후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민후통 등) 발생 시 관합보건소 또는 1339, 지역번호+120 상당

" 감염병 발생 정보 확인 :

해외감염병 NOW 🚷 메셔!



新日初:2020.12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개인보호구의 사용

1. 목적

○ 의료 현장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시 개인보호구의 선택과 사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감염전파를 방지하고 대응 요원(의료종사자, 보건소 직원, 구급대원 등)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

2. 정의

- 개인보호구
 - 사용자가 감염원으로부터 보호되도록 고안된 의복이나 기구류를 말함

3. 적용범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사환자, 확진환자 및 접촉자에 대한 대응 과정 전반
 - 검역, 이송, 역학조사, 선별진료, 진료, 처치, 검체채취 및 검체이송, 검사, 수술, 기구관리, 환경관리, 사체관리 등

4. 주요내용

- 개인보호구의 종류
- 개인보호구 선택
- 개인보호구 착용
- 착용 중 주의사항
- 개인보호구 탈의
- 탈의하여 바로 의료폐기물로 배출



5. 사용 원칙

- 의심환자가 최종 음성임을 확인하기 전에 대응하거나 확진환자가 전염력이 있는 동안 밀접 접촉하는 보건요원 및 의료종사자는 개인보호구 사용 등 지침 준수
- 재사용이 불가피한 장비ㆍ제품을 제외하고 일회용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재사용이 불가피한 장비는 반드시 제조사 권고에 따라 소독 또는 멸균 처리
- 책임자의 역할
 - 구성원에 대한 정기교육·훈련 실시1)
 - · 적합한 개인보호구 선택·사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
 - · 사용한 개인보호구는 적절히 폐기하도록 함
 - · 재사용 가능한 개인보호구에 한하여 적절한 소독 처리 후 보관하도록 함
 - 필요한 개인보호구의 종류와 수량을 파악하여 구비, 제공
- 표준주의, 접촉주의, 비말주의(또는 공기매개주의)를 포함한 감염관리 방법 준수
- 감염 예방에 효과적이려면 개인보호구의 선택과 올바른 사용이 중요함
 - 개인보호구 선택 시 고려할 사항
 - · 예상되는 노출 유형(접촉, 비말이 튐, 공기 통해 흡입, 혈액·체액이 튐)
 - · 격리주의 유형(Category of isolation precautions)
 - i) 표준주의와 더불어 비말주의(노출 상황에 따라 공기매개주의)
 - ii) 상황, 행위, 용도에 적합한 개인보호구 선택
 - 、 업무 상황·행위에 대한 적합성, 내구성(durability and appropriateness for the task) 등
 - 감염원과 접촉 전에 착용(예: 환자 접촉 전, 격리병실 밖)
 - 착용 할 때 보호구별 착용 방법 준수(특히, 호흡기보호구의 밀착 상태)
 - 사용한 개인보호구에 오염된 병원체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
 - · 착용 상태에서 환자 이외의 주변을 접촉하여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
 - · 벗을 때 본인의 신체 부위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
 - 사용한 개인보호구는 감염원으로부터 안전한 곳에서 제거(예: 격리병실 밖의 갱의실 등)
- 사용한 개인보호구는 무조건 오염으로 간주하여 벗자마자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 의료폐기물상자에 버려 폐기되도록 함
- 모든 개인보호구는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파손되거나 오염된 개인보호구는 사용 · 보관하지 말고 폐기

¹⁾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 사용한 개인보호구 중 재사용이 불가피하고 소독 처리가 가능한 장비에 한하여 적절한 소독 처리 후 사용
- 눈에 보이지 않게 손과 신체 일부, 의복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개인보호구를 벗은 후에 항상 손위생(손씻기 또는 손소독)과 개인위생 철저

○ 개인보호구 충족 요건

보호대상	개인보호구∗	필수여부	개인보호구 충족요건 또는 적용상황
<u> </u>	일회용 N95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0	_
호흡기	PAPR(N95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대체)	필요 시	에어로졸 발생되는 처치 시(N95 동급의 호흡기 보호구 대체)
눈	보안경(또는 안면보호구)	0	김서림방지 및 긁힘 방지 코팅 처리
	일회용 전신보호복	0	방수성 또는 2-3시간 이상 방수 유지 혈액 및 바이러스 불침투 되는 제품
전신	일회용 장갑	0	손목까지 덮을 수 있는 장갑, 두 겹 착용
• 의 복	일회용 덧신(신발덮개)	0	발목 높이의 미끄럽지 않은 재질
	일회용 덧가운/앞치마	필요 시	몸통에서 종아리까지 덮을 수 있는 보호구 예) 투석이나 지속적 신대체요법 시 착용

6. 개인보호구의 종류와 용도

- 개인보호구는 **호흡기, 눈, 손, 발을 포함한 전신과 의복**을 감염원으로부터 보호하도록 고려하여 선택
 - 가운, 장갑, 마스크(N95 또는 KF94 이상), 눈보호구, 안면보호구, 장화 또는 신발커버 등
- 개인보호구는 **질환별** 또는 **감염경로**, **감염 노출 상황・행위**, 용도에 맞게 보호구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

○ 개인보호구별 특성과 용도

보호구	위해요소	특성 및 용도(indications for use)	참고사진
장갑(Glove)	접촉		
가운(Gown)	비말, 혈액, 체 액이 전신이 나 의복에 튐	바이러스 비말이 전신과 의복에 오염되어 간접 전파 되는 것을 방지	
전신보호복 ²⁾ (Coveralls)	비말, 혈액, 체 액이 전신이	바이러스 비말이 전신과 의복에	1
덧신 (Shoe covers)	나 의복, 신발 에 튐	오염되어 간접 전파 되는 것을 방지	
장화 (Boots)	혈액, 체액이 신발에 튐	신발덮개 대신 착용 • 바닥이 젖거나 오염이 심할 경우 • 노출위험에 따라 선택	3
헤어캡 (Hair cap)	머리의 오염	비말이 머리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	9
보안경 (Goggle)	혈액, 체액이 눈의 점막에 튐	눈의 점막 오염 방지 보안경 재용 시 바이러스에 효과적인 소독제로 소독 후 사용, 보관	
안면보호구 (Face shield)	혈액, 체액이 눈의 점막에 튐	- 눈의 점막과 안면부 오염 방지 - 노출 위험 정도에 따라 보안경 대신 착용 - 안면보호구 재사용 시 바이러스에 효 과적인 소독제로 소독 처리 후 사용, 보관	8
호흡기보호구 ³⁾ : N95 동급 이상의	비말 또는 에어로졸 흡입	- 코, 입 점막을 통해 호흡 시 병원체 입자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	

보호구	위해요소	특성 및 용도(indications for use)	참고사진
호흡기보호구		- 적용상황 예 : • 의심/확진 환자 격리병실 입실 시(의료 종사자, 방문객 포함한 모든 출입자) • 기침유도 시술 시 • 에어로졸 생성 처치 시 • 의심/확진환자 이송 시 등	
호흡기보호구 : PAPR ⁴⁾	비말 또는 에어로졸 흡입	 코와 입의 점막을 통한 감염원 흡입 방지 전지충전, 필터교환, 장비 소독 등 철 저한 점검, 관리가 필요함 파손, 오작동 여부를 사전 점검하여 사전 수리, 교체 또는 폐기하여야 함 재사용이 불가피하면 소독 처리 후 사용, 보관 	de

8. 개인보호구 착의(착용) 및 제거

○ 착의(착용)

- 상황에 따른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에 따라 미리 물품을 준비하여 올바른 착용* 순서와 방법으로 착용
- * 머리는 단정히 묶거나 고정하고 시계, 장신구 등을 제거하여 오염 방지
- * 탈수 예방을 위해 보호구 착용 전 수분을 보충하고 미리 화장실에 다녀옴
- * 착용 후 오염, 파손이 있을 경우 처치, 행위 사이에 개인보호구 교체
- * 속장갑이 젖을 정도라면 근무자 교대

○ 탈의(제거)

- 감염원으로부터 안전한 곳(예: 격리병실 밖의 갱의실 등)에서 개인보호구에 오염된 감염원이 신체 부위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탈의
- 각 보호구는 벗자마자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올바른 순서와 방법으로 탈의하여 의료폐기물상자에 바로 버림

²⁾ 감염성 물질에 대한 보호력이 있는 보호복을 선택. 예를 들면, 유럽의 경우 EN14126, ASTM1671 규정을 따르며, 생물학적 위험(biohazard) 표식이 있는 보호복을 사용

³⁾ 호흡기보호구(Respirator) : 숨 쉴 때 병원성 입자를 흡입하지 않도록 착용하는 보호구

⁴⁾ PAPR : 전동식 공기정화 호흡기보호구(Powered air-purifying respirator)

구분		N95 동급의 호흡기보호구와 전신보호복 시용 시 순서	PAPR과 전신보호복 사용 시 순서			
	1	손위생	손위생			
	2	(속)장갑	(속)장갑			
	3	전신보호복 하부	전신보호복			
착의 (착용)	4	신발커버(또는 장화)	신발커버(또는 장화)			
(작용) 순서	5	N95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전동식호흡기보호구(PAPR) ⁵⁾			
	6	보안경(또는 안면보호구)	후두			
	7	전신보호복 상체후드 착용 및 여밈	전동식호흡기보호구와 후두 연결			
	8	(겉)장갑 (겉)장갑				
(격리실 등 전염력이 있는 구역 밖에서 탈의)						
	1	(겉)장갑	(겉)장갑			
	2	장갑 소독 장갑 소독				
	3	전신보호복 전동식호흡기보호구(PAPR				
탈의6)	4	신발커버(또는 장화) 후드				
(제거)	5	장갑소독	전신보호복			
순서	6	보안경(또는 안면보호구)	신발커버(또는 장화)			
	7	N95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속)장갑			
	8	(속)장갑	손위생			
	9	손위생	_			

-

⁵⁾ PAPR과 후두 착·탈의 순서는 제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제조사 권고에 따름

⁶⁾ 보호구 벗는 과정에서 속장갑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하나씩 제거할 때마다 손소독 후 다음 보호구를 탈의(제거)하는 것이 유용함

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상황별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

	개인보호구						
	호흡기 보호		전신 보호		눈 보호		
상황, 행위	수술용 마스크	N95 동급의 호흡기 보호구	전동식 호흡기 보호구	장갑 ⁷⁾	긴팔 가운	전신 보호복 (덧신포함)	보안경 (또는 안면보호구)
검역(역학조사)		•		•		•	•
선별데스크		•		•	•		
격리진료소 접수, 안내		•		•	•		
격리진료소 진료, 간호		•		•			•
이송(구급차 운전자)8)		•		•			
이송(검역관, 보건소직원, 응급구조사 등)		•		•		•	•
구급차 소독		•		•		•	•
의심환자 병실출입, 진료, 간호 등		•		•			•
에어로졸 생성 처치 ⁹⁾				•			•
검사(X-ray 등 영상의학검사)				•	(•
호흡기 검체 채취		•	10)	•	(•
검체 취급(실험실, 검사실 등)11)12)		•	•	•			•
검체 이송(파손없이 포장된 검체)				•			
사체 이송, 안치		•		•		•	
병실 청소・소독		•		•			•
의료폐기물 포장, 취급		•		•			•
의료폐기물 운반	•			•	•		

⁷⁾ 의심·확진 환자 구역의 진료, 처치, 간호, 검사, 청소 등을 시행할 경우 장갑 파손 위험, 감염 노출 위험을 고려하여 **이중장갑 착용**

⁸⁾ 구급차 운전석이 차폐되어 있지 않거나 의심환자 또는 확진환자 접촉의 기회가 있을 경우 전신보호복 (덧신포함), N95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장갑(필요 시 보안경 또는 안면보호구 추가) 착용

⁹⁾ 에어로졸이 생성되는 처치는 기관삽관(endotracheal intubation), 심폐소생술, 기관지내시경술, 기도분 비물 흡인, 기관관리(tracheostomy care), 사체부검, 비침습적 양압환기(Continuous positive air pressure), 분무요법(nebulizer therapy), 가래배출 유도의 처치, 상황, 행위를 말함

¹¹⁾ 검체 취급 실험실·검사실에서 개인보호구 선택, 사용, 관리에 관한 사항은 실험실 생물안전지침(질 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생물안전평가과)에 따름

¹²⁾ ClassII급의 생물안전작업대 작업 시 가운(긴팔), 일회용 장갑 착용 Lee H, Ki C-S, Sung H, et al. Guidelines for the Laboratory Diagnosis of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in Korea. Infection & chemotherapy. 2016;48(1):61-69.)

부록 5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요약)

☑ 가급적이면 전문소독업체에 위탁 권고

- ◈ 환자 노출 장소는 다음 지침에 따라 소독을 실시한 후, 다음날까지 사용을 금지하고 이후 장소 사용 가능
 - *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소독 당일 사멸하나, 소독제 사용에 따른 위해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하루 사용 금지(소독제 설명서에 따른 사항 준수)
- 오염된 환경 표면을 청소하고 소독하기 전에 오염이 확인된 장소를 표시하고, 오염된 물건은 밀폐할 것
- 청소/소독 장비를 준비하고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소독 요원을 배치
-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 두기
- 천(타올)에 소독제를 적신 후 표면에 도포
 - * 감염성 물질을 에어로졸화할 수 있는 소독 방법 금지
- 소독제로 바닥을 닦기(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500ppm~1000ppm))
- 소독제로 자주 접촉하는 부분* 및 화장실 표면을 닦은 후 건조
 - * 엘리베이터 버튼, 손잡이 레일, 문 손잡이, 팔걸이, 등받이, 책상, 조명 조절 장치, 키보드, 스위치 등
- 블라인드 뿐만 아니라 최대 3미터 높이의 벽을 소독제로 닦기
- 온수를 사용하여 세탁용 커튼, 직물, 이불 등을 세탁기로 세탁
- 전문소독업체는 환자가 사용한 매트리스, 베개, 쿠션 또는 카펫을 적절하게 소독
- 다시 소독제로 여러 번 바닥 청소 시행
-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각 영역을 청소 한 후에는 비 다공성 청소 장비* 를 소독하고, 천(타올) 등 흡수성 재료로 만든 청소/소독 장비는 폐기
 - * 소독 장비는 다른 일반 장비와 구분
- 소독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의료용 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리기

<참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 예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질병관리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20.2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19. 11. 22.>

소독의 방법(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

1. 청 소

오물 또는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을 수집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위생적인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

2. 소 독

가. 소각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소독대상 물건 중 소각해야 할 물건을 불에 완전히 태워야 한다.

나. 증기소독

유통증기(流通蒸氣)를 사용하여 소독기 안의 공기를 빼고 1시간 이상 섭씨 100도 이상의 증기소독을 해야 한다. 다만, 증기소독을 할 경우 더럽혀지고 손상될 우려가 있는 물건은 다른 방법으로 소독을 해야 한다.

다. 끓는 물 소독

소독할 물건을 30분 이상 섭씨 100도 이상의 물속에 넣어 살균해야 한다.

라. 약물소독

다음의 약품을 소독대상 물건에 뿌려야 한다.

- 1) 석탄산수(석탄산 3% 수용액)
- 2) 크레졸수(크레졸액 3% 수용액)
- 3) 승홍수(승홍 0.1%, 식염수 0.1%, 물 99.8% 혼합액)
- 4) 생석회(대한약전 규격품)
- 5) 크롤칼키수(크롤칼키 5% 수용액)
- 6) 포르마린(대한약전 규격품)
- 7) 그 밖의 소독약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석탄산 3% 수용액에 해당하는 소독력이 있는 약제를 사용해야 한다.

마. 일광소독

의류, 침구, 용구, 도서, 서류나 그 밖의 물건으로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독방법을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일광소독을 해야 한다.

3. 질병매개곤충 방제(防除)

가. 물리적·환경적 방법

- 1) 서식 장소를 완전히 제거하여 질병매개곤충이 서식하지 못하게 한다.
- 2) 질병매개곤충의 발생이나 유입을 막기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3) 질병매개곤충의 종류에 따른 적절한 덫을 사용하여 밀도를 낮추어야 한다.

나. 화학적 방법

- 1) 질병매개곤충에 맞는 곤충 성장 억제제 또는 살충제를 사용하여 유충과 성충을 제거해야 한다.
- 2) 잔류성 살충제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유입을 막아야 한다.
- 3) 살충제 처리가 된 창문스크린이나 모기장을 사용해야 하다.

다. 생물학적 방법

- 1) 모기 방제를 위하여 유충을 잡아먹는 천적(미꾸라지, 송사리, 잠자리 유충 등)을 이용한다.
- 2) 모기유충 서식처에 미생물 살충제를 사용한다.

4. 쥐의 방제

가. 위생적 처리

- 1) 음식 찌꺼기통이나 쓰레기통의 용기는 밀폐하거나 뚜껑을 덮어 먹이 제공을 방지해야 한다.
- 2) 쓰레기 더미, 퇴비장, 풀이 우거진 담장 등의 쥐가 숨어있는 곳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서식처를 제거한다.
- 나. 건물의 출입문, 환기통, 배관, 외벽, 외벽과 창문 및 전선 등을 통하여 쥐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처리해야 한다.
- 다. 쥐약을 적당량 사용하여 쥐를 방제한다.

5. 소독약품의 사용

살균·살충·쥐잡기 등의 소독에 사용하는 상품화된 약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살균제품 및 구제제품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살균제류 및 구제제류로 한정한다)으로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용법·용량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

부록 6 코로나19 폐기물 관리

1. 의료폐기물 관리

가. 폐기물 관리

- 폐기물은 적절하고 안전한 취급을 위해 발생장소에서 분리, 처리
 - 격리입원실에 의료폐기물함을 두고 의료폐기물 업체를 통해 소각처리
- 바늘이나 칼날과 같은 날카로운 도구는 뚫리지 않는 폐기물 전용용기에 수집
 - 이는 검사실과 같이 물건이 사용되는 위치에서 가까운 데 두어야 함
- 고형의 날카롭지 않은 감염성 폐기물은 새지 않는 폐기물수집함에 모아서 덮어둠
 - 수집함은 몸으로 지탱하여(어깨에 올리는 등) 옮기지 않음
- ㅇ 폐기물의 처리는 의료폐기물 처리규정에 따름
 -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넣어 폐기물 전문업체에서 수거 후 소각
- 폐기물 박스 외에 병실에 의료폐기물이 적체되어 있지 않도록 주의
- 벼이나 토물 등 환자의 배설물은 하수배출규정에 따라 하수설비에 버림
 - 액상 폐기물을 버릴 때, 주변으로 튀지 않도록 주의

나. 의료폐기물 처리 원칙

- (격리의료폐기물)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서 의료행위와 관련된 일체의 폐기물은 격리 의료폐기물로 처리
 - ★『페기물관리법 제4조(의료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 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로 조직물류, 병리계, 손상성 및 오염 세탁물류(환자 침구, 환자복, 분비물이 묻은 린넨류) 등을 모두 포함
- (전용용기)『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합성수지류 상자형 격리의료폐기물 전용 용기를 반드시 사용하고, 내부에는 유출 방지를 위하여 내피비닐을 추가 사용
 - (격리의료폐기물 용기 규격)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 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용도에 맞게 5L, 10L, 20L, 30L 등을 사용
 - 내피비닐: 플라스틱용기와 함께 사용하여야 하며 단독 사용 금지







< 격리의료폐기물 전용용기 >

< 내피비닐 >

○ 처리 및 소독

- 전용용기는 사용 전에 반드시 표기사항을 기재
- 폐기물이 발생한 때(해당 진찰·치료 및 시험·검사행위가 끝났을 때)부터 전용용기에 넣어야 함
- 의료폐기물의 투입이 끝난 전용용기는 폐기물량에 상관없이 소독 후 밀폐 포장하며, 최대 포장량은 용기 부피의 75% 미만으로 사용
- 폐기물 처리 시 폐기물 투입, 용기 밀폐포장 등 외부표면을 소독
- 액상폐기물의 경우, 용기 밀폐 전 사용하는 소독제(식약처 허가제품)에 따라 최종 적정 살균 농도가 유지되도록 혼합 처리
- (운반 및 보관) 밀폐된 용기는 격리의료폐기물 전용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지정된 격리 보관장소에서 임시보관하고, 반드시 7일 이내 위탁처리 업체에 인계
- (위탁처리 등)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허가를 받은 폐기물 수집·운반·소각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
 - 위탁처리 과정 중 폐기물을 직접 접촉하는 자는 전신보호복, 안면보호구 등의 개인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운반차량 내 스필키트 비치로 폐기물 유출 등의 비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다. 고온고압 멸균처리를 못하는 의료폐기물 처리 절차

- 환자 직접 접촉 의료진의 개인보호구 처리
 - 폐기 시 20L 이상의 격리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사용한다. 사용 전 내피비닐을 전용 용기 입구가 오염되지 않도록 뒤집어 덮음
 - 사용한 개인보호구가 전용용기 외부 면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 보호장비 내부 면을 밖으로 뒤집어서 돌돌 말아 오염부위가 최소 노출되도록 하여, 폐기한다.
 - 사용한 개인보호구 폐기물을 모두 담은 후, 새로운 개인보호구를 착용
 - 폐기물이 들어 있는 비닐 끝을 가운데로 모아서 케이블타이,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내용물이 새지 않도록 밀봉
 - 해당 전용용기의 뚜껑을 완전히 닫아 밀폐

내부

소독

 \rightarrow

표면

소독

- 밀폐 포장된 용기의 외부표면을 소독
- 폐기물 용기 밀폐에 사용한 개인보호구는 별도의 폐기물 용기에 넣어 폐기



① 전용 용기 사용



② 내피비닐 밀봉



③ 용기 밀폐



④ 전용 운반장비사용 이동



⑤ 지정된 격리 보관장소에 임시보관(위탁처리 전)



표면

소독

⑥ 폐기물 위탁 처리업체로 인계

〈 의료폐기물 처리 절차 〉

라. 고온고압 멸균처리 가능한 의료폐기물 처리 절차

- 고온고압멸균기 이용 격리의료폐기물 폐기 처리
 -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격리의료폐기물 용기 내 멸균용 Y-bag을 넣고, 전용용기 입구가 오염되지 않도록 덮음
 - * 멸균처리 시는 반드시 멸균용 Y-bag을 사용하여 멸균 후 폐기처리 함
 - 폐기물을 Y-bag 내 75% 이내로 담고, Y-bag 비닐 끝을 테이프를 사용하여 느슨하게 묶음 (멸균을 위한 고압 수증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입구를 완전히 밀봉하지 않음)
 - Y-bag 및 격리의료폐기물 용기 겉 표면 및 바닥 부분까지 소독제로 표면을 소독
 - 격리 폐기물 전용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고온고압 멸균기로 이동 후 Y-bag만 멸균 용기에 넣고 멸균처리(121℃, 30분)
 - 멸균 완료 후, Y-bag의 누출 여부를 확인하고, 전용용기에 있는 내피비닐의 겉이 닿지 않도록 담고 비닐 끝을 가운데로 모아서 케이블타이,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내용물이 새지 않도록 밀봉
 - 해당 전용용기의 뚜껑을 완전히 닫아 밀폐하고, 용기의 겉 표면 및 바닥 부분까지 소독 제를 소독
 - 격리의료폐기물 전용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지정된 임시 격리 보관 장소로 이동
 - 이동 완료 후 환자 접촉 의료진 개인보호구 처리 절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개인보호 구를 탈의하고 안전하게 처리



① 전용 용기 사용



② 멸균용 Y-Bag 사용



③ 테이프로 Y-Bag 묶기



표면 소독

내부

소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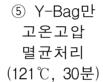
표면 소독

내외부

소독



④ 임시로 뚜껑덮은 채 멸균실로 이동



→ 나 ∨-

⑥ 전용용기 내피비닐 내부에 Y-Bag 넣고 밀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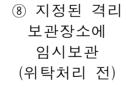
표면 소독



표면 소독



① 전용 운반장비 사용 이동



 \rightarrow

⑨폐기물위탁처리업체로인계

〈 의료폐기물 처리 절차 (고온고압 멸균처리) 〉

자가 격리의 생활폐기물 관리·처리 매뉴얼

<환경부>

① '코로나10' 의심증상이 발생하지 않을 때 생활폐기물의 배출요령

- 가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제공되는 전용봉투에 담아서 소독제로 쓰레기층 상부와 봉투 외부를 충분히 소독하여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일 1회 이상 소독하여 주시길 권장 드립니다.
- 전용봉투는 밀폐 포장이 가능하도록 체적의 75% 미만으로 담도록 하며, 다 사용하신 봉투는 소독제로 충분히 소독 후 밀폐되도록 묶어 별도의 보관장소에 모아 보관하 시고 1일 1회 이상 소독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전용봉투에 담긴 폐기물의 외부로 배출을 자제하되, 불가피하게 전용봉투에 담긴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할 때에는 봉투를 골고루 소독한 후 다시 한번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넣어 관할 보건소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수거,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전용봉투가 제공되기 전까지는 전용봉투를 대신하여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담 고, 배출할 때는 다시 한번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나타날 때 생활폐기물 배출요령

○ 일단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될 때에는 보건담당자에게 즉시 연락하시고, 아래와 같이 전용봉투에 담아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당국과 전문 처리업체가 무상으로 수거하여 안전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의료폐기물 전용봉투



부록 8 자주묻는질문 (FAQ)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임상 역학적 특성이 아직 밝혀지지 않아 아래의 내용은 변경 될 수 있음

1. 감염병 정보

Q1. 코로나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인가요?

- 코로나바이러스는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그중 사람에게 전파 가능한 사람 코로나바이러스는 현재 6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 이중 4종은 감기와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며, 나머지 2종은 각각 MERS 코로나바이러스와 SARS 코로나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 이번 중국 우한시 폐렴 유행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파된다고 알려 졌으며,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개된 염기서열분석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박쥐유래 사스유사 바이러스와 89.1%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Q2. 코로나19는 어떻게 전염되나요?

- 코로나19는 감염된 사람이 기침, 재채기를 했을 때 공기 중으로 날아간 비말(침방울)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거나,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눈·코·입 등을 만질 때 점막을 통해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전염이 됩니다.
- WHO는 다음과 같이 공기전파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하면 큰 침방울(droplets)이 뿌려질 수 있으나, 공기 중에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고 떨어집니다. 삽관(intubation)과 같은 의료적 처치 과정에서도 작은 침방울들이 공기 중으로 뿌려집니다. 공기정화시스템에서 메르스바이러스 RNA가 검출 되었던 보고는 있으나 살아있는 바이러스는 아니었습니다. 코로나19의 전파방법에 대해서는 정보 분석을 통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 (출처) WHO, Q&A on coronaviruses

Q3. 무증상에서도 전파되나요?

- 국내의 코로나19 발생사례 중 무증상에서 전파된 사례는 현재까지 명확히 확인된 바 없습니다.
- 무증상 감염인지 아니면 발병하였으나 경미하여 증상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전파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코로나19 유행과 관련된 사례들에 대해 다각적 분석이 이루어진 후에 가능할 것입니다.
- WHO는 다음과 같이 무증상 전파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주요증상(significant symptoms)을 보이기 전에 감염을 일으키는 것이 가능할 수도(may be possible) 있으나, 현재 입수된 자료에 의하면 증상을 발현한 사람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가 대다수입니다.

※ (출처) WHO, Q&A on coronaviruses

2. 발생현황

Q1. 해외에서 코로나19 환자는 얼마나 발생했나요?

○ 코로나19 해외 발생동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http://ncov.mohw.go.kr) '발생동향'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2. 우리나라에서 환자는 얼마나 발생했나요?

○ 코로나19 국내 발생동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http://ncov.mohw.go.kr) '발생동향'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접촉자

Q1. 접촉자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 접촉자의 범위는 역학조사반이 노출정도를 평가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접촉자는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노출력(접촉 장소·접촉 기간 등) 등을

고려하여 증상발생 1일전부터 접촉자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Q2. 접촉자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 확진환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로 부터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실시합니다.
- 보건소장은 접촉자에게 자가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생활수칙을 안내하며, 1:1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자가격리 해제 시까지 매일 2회 유선 연락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여부를 확인합니다.

Q3. 자가격리 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자가격리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방문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 키고,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공용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 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 자가격리 대상자의 생활 준수사항으로는 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개인물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 세탁하고, 식사는 혼자서 하며,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Q4. 자택 내 독립된 공간 확보가 안 될 경우 어떻게 격리하나요?

○ 자택 내 독립된 공간 확보가 안되거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자체 내에서 적절한 자가격리 장소에 시설 또는 병원 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5. 자가격리를 하면 생활지원을 해 주나요?

○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지원, 유급휴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활 읍, 면, 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6. 자가격리 중 외출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처벌기준이 있나요?

○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통한 벌칙(300만원 이하)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Q7. 외국인인데, 자가격리 중이지만 증상도 없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출국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보건소로부터 격리통지서를 받은 경우, 증상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기간 동안 외부 활동 및 출국 등을 할 수 없습니다.

Q8. 확진환자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 질병관리본부는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을 보도자료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증상발생 1일전'부터 확진환자와 시간적·공간적으로 감염을 우려할 만큼의 접촉이 일어 난 장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 환자의 개인정보 등은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접촉자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방역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확진환자의 이동경로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크)

http://ncov.mohw.go.kr/bdBoardList.do?brdId=1&brdGubun=12&dataGubun=&ncvContSeq=&contSeq=&board_id=&gubun=

4. 검사

Q1. 누가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본 지침 상의 사례정의에 따라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유증상자로 분류되는 경우에 검사 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막연한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므로, 의사선생님의 전문적인 판단을 신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환자 사례 정의 >

- ▶ 의사환자①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 의사환자②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 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 의사환자③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인 자

< 조사 대상 유증상자 >

- ▶ 조사 대상 유증상자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발생 국가· 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 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이 나타난 자
- * 질본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수시 변동 가능함
- ▶ 조사 대상 유증상자②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의심되는 자

☞ 사례(예시)

- 1)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입국자와 자주 접촉하여 노출위험이 있는 사람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국가·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이 나타난 자와 접촉 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3) 입원이 필요하지 않는 원인미상 폐렴
- 4) 기타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의심되는 자

※ 발열 : 37.5 ℃ 이상

<출처: 질병관리본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6판)」, '20.2.20.기준>

Q2. 어디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 및 일반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검사 가능한 340개소의 선별진료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mohw.go.kr/react/popup_200128.html
- 자세한 문의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Q3.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검체 채취) 검체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의사의 지도하에 시행)가 지정된 장소(선별진 료소 등)에서 채취합니다. 총 2가지 검체를 채취하며 검체 채취시 불편감·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① (하기도 검체) 가래 : 타액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기침하여 객담통에 뱉어 채취
- ② (상기도 검체) 비인두 및 구인두 도말물 혼합(1개 튜브)
 - : (비인두도말) 콧구멍 깊숙이 면봉을 삽입하여 분비물 채취
 - : (구인두도말) 면봉으로 목구멍 안쪽 벽의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
- (유전자검사) 검사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는 직접 검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수탁검사 기관으로 검사를 의뢰합니다.

Q4. 유전자검사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유전자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6시간이지만 검체 이송 시간과 대기시간을 고려하면 검사 후 1~2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 검사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의사환자로 신고한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진찰, X-ray 검사 등 다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Q6. 중국을 방문한 후에 증상은 없지만 검사를 할 수 있나요?

○ 증상이 없는 경우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중국 여행 후 14일 이내 증상이 나타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에 연락하여 검사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5. 치료

Q1. 코로나19는 백신이 있나요?

○ 현재 알려져 있는 백신은 없습니다.

Q2. 확실한 치료제가 없다던데,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나요?

- 코로나19는 증상에 따른 대증치료(병의 증상에 대응하여 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 치료제가 없다는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찾아서 치료하도록 만들어진 표적치료제(targeted therapy)가 없다는 뜻이며, 치료가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Q3. 코로나19로 확진되면 국가에서 치료비를 지원해주나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6. 여행

Q1.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는데 중국 여행을 가도 되나요?

- 대한민국정부는 중국 후베이성에 대해서는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 1.25일 기준), 전 중국 (홍콩, 마카오 포함)지역*은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1.28일 기준)를 발령하였습니다.
- 질병관리본부 '해외감염병 NOW"에서 제공하는 해외발생동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http://ncov.mohw.go.kr/bdBoardList.do?brdId=1&brdGubun=11&dataGubun=&ncvContSeq=&contSeq=&board_id=&gubun=

▶ 방문 전

- 질병관리본부 '해외감염병NOW'에서 발생 정보 및 감염병 예방 수칙을 확인해주세요.

▶ 방문 중

- 가금류,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해주세요.
- 호흡기 유증상자(발열, 호흡곤란 등)와의 접촉을 피해주세요.
- 현지 시장 등 감염위험이 있는 장소 방문을 자제해주세요.
-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 방문 후

-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24시간 상담가능)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의심 증상으로 진료를 받고자 하실 경우는 지역 내 선별진료소를 우선으로 방문하시고.
- 진료 전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Q2. 동남아 여행을 예약했는데, 여행을 가도 되나요?

○ 코로나19가 동남아 등 26개국에서 환자 발생이 보고(2.19. 기준) 되고 있으므로, 질병관리 본부 '해외감염병 NOW'에서 제공하는 해외발생동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http://ncov.mohw.go.kr/bdBoardList.do?brdId=1&brdGubun=11&dataGubun=&ncvContSeq=&contSeq=&board_id=&gubun=

▶ 방문 전

-질병관리본부 '해외감염병NOW'에서 발생 정보 및 감염병 예방 수칙을 확인해주세요.

▶ 방문 중

- -가금류,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해주세요.
- -호흡기 유증상자(발열, 호흡곤란 등)와의 접촉을 피해주세요.
- -현지 시장 등 감염위험이 있는 장소 방문을 자제해주세요.
-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 방문 후

-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24시간 상담가능)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의심 증상으로 진료를 받고자 하실 경우는 지역 내 **선별진료소를 우선으로 방문**하시고.
- -진료 전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Q3. 중국 여행을 다녀온 후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입국일로부터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적이 있는 외국인은 입국이 금지되며, 내국인이 경우 입국 시 국내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게 됩니다.
 -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내국인은 검역소에서 시·도로 명단을 통보하고, 주소지 소재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및 증상발생 여부를 14일간 모니터링 합니다.
- 후베이성 외 중국지역(홍콩, 마카오 포함)에서 입국한 경우 입국일로부터 14일 동안 건강 상태를 스스로 모니터링하시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중 어느 하나라 도 있을 시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와 상담해 주시고 선별진료 소를 우선 방문하여 반드시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7.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관리

Q1. 의사환자는 선별진료소 이외 일반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안되나요?

○ 의사환자는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선별진료소(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고 단, 원인미상폐렴환자는 일반의료기관에서 검체 채취 등을 합니다.

Q2. 의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 의사환자는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방문, 확진환자 접촉, 원인미상 폐렴인 자 등 위험도가 높은 경우이고
- 조사대상유증상자는 의사환자보다 위험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코로나19 발생 국가 방문 력과 의사소견에 따른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 일반 의료기관에서 마스크, 일회용 장갑 및 고글 등 개인보호구 등을 착용하고 검체를 채취하여 수탁검사기관으로 검사의뢰 가능합니다.
 - *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만 검사비 지원가능하므로 제1급감염병(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신고 필요

- 감염병 발생신고하고, 역학조사 및 격리 통지서 발급을 하지 않지만 검사 결과 양성이면 확진환자와 동일한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Q3. 의사환자와 조사 대상 유증상자 신고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 의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신고시 감염병발생 신고서→감염병 발생정보→비고(특이사항) 란에 의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구분하여 해당되는 분류를 반드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환자 구분 >

▶ 의사환자① : 중국 방문 후 유증상자

▶ 의사환자② :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유증상자▶ 의사환자③ : 입원 필요 원인미상 폐렴인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구분 >

▶ 조사대상 유증상자① : **중국 외 코로나**19 **발생 국가·지역** 방문 후 유증상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② : 의사소견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의심자

Q4.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일반 의료기관에 가는 경우는 신고, 환자관리(외출자제 권고, 이동방법안내, 보건교육 등)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행하나요?

○ 그렇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외출자제, 대중교통 이용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올바른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등 보건교육을 일반의료기관에서 시행해야 합니다.

Q5. 의사환자의 입원이 필요한 경우 누가 어디로 배정하나요?

- 해당 시도에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또는 공공병원을 지정합니다.
- 의사환자의 경우 해당 시도에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또는 공공병원을 지정하고 구급 차(보건소나 119)로 이송해야 합니다.

8. 기타

Q1.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감염예방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손소독제 비치,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를 수행하도록 권고하였으며, 다중 행사는 감염예방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침이 마련 되었사오니,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다녀갔던 다중시설 등의 경우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 예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참조
 - 환자 노출 장소는 보건소의 지시에 따라 소독 등의 방역조치를 하게 됩니다.
 - 환자 노출 장소는 다음 지침에 따라 소독을 실시한 후, 다음날까지 사용을 금지하고 이 후 장소 사용 가능합니다.
 - *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소독 당일 사멸하나, 소독제 사용에 따른 위해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하루 사용 금지

Q3. 가정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시 소독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 진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 예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참조
- 1. 소독을 시작하기 전에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청소 및 소독을 하는 동안 얼굴과 눈을 만지지 않는다.
- 2. 소독제를 준비한다.
 - * 환경부 허가제품. 차아염소산나트륨(가정용 락스). 70% 알콜 등

※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 방법

- · 희석배율 : 0.05% 혹은 500ppm
- · 희석방법(1ml, 희석액 기준):
 - 5% 락스를 1:100 으로 희석 : 물 1,000mL, 5% 락스 10mL
- · 접촉시간: 구멍이 없는 표면은 10분 이상, 물품 침적 시 30분 침적
- ** 알콜은 차아염소산나트륨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표면(예 : 금속)에 사용
- 3.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 둔다.
- 4. 소독 구역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준비된 소독제로 바닥을 반복해서 소독한다.
- 5. 준비된 소독제로 천(타올)을 적신 후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와 화장실 표면을 닦는다.
 - * 손잡이, 팔걸이, 책상, 의자, 키보드, 마우스, 스위치, 블라인드, 창문, 벽 등
- 6. 침대 시트, 베개 덮개, 담요 등은 세탁기와 세제를 사용하여 세탁한다.
- 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사환자가 사용했던 매트리스, 베개, 카펫, 쿠션 등은 검사결과가 나올 때 까지 사용하지 않는다.
 - * 검사결과가 양성이면 폐기 처분하거나 소독, 음성이면 사용가능
- 8. 소독에 사용한 모든 천(타올)과 소독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전용봉투에 넣는다.
- 9. 장갑을 벗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 10. 보건용 마스크를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 11. 장갑과 마스크를 전용봉투에 넣는다.
- 12. 소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다른 가정용 폐기물과 분리하여 처리한다.
- 13. 청소 후 즉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 14. 소독한 장소를 환기 시킨다.

Q4. 중국에서 오는 택배를 받아도 되나요?

- 아직 코로나19의 전파경로에 대해 알지 못하는 점들이 많습니다.
- SARS, MERS를 기준으로 설명할 때 이 코로나바이러스들은 제품 표면에서 생존성이 낮기 때문에 일정 기간에 걸쳐 배송되는 제품 또는 포장재를 통해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 WHO, 미국 CDC는 "현재 수입 상품과 관련된 2019-nCoV의 전파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며, 수입 상품과 관련된 2019-nCoV의 사례도 미국에서 없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출처) 미국 CDC,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FAQs

Q5.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로부터 감염될 수 있나요?

- 아직 코로나19의 전파경로에 대해 알지 못하는 점들이 많습니다.
- 현재까지는 개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로부터 전파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 (출처) WHO, Q&A on coronaviruses

[지침 업무별 관련 부서]

구분	담당부서
● 감염 정보	신종감염병대응과
● 발생현황	위기분석국제협력과
● 접촉자	신종감염병대응과
● 의사환자 및 조사유증상자 관리	신종감염병대응과
검사	감염병진단관리과, 바이러스분석과
● 치료	신종감염병대응과
● 여행	검역지원과
● 기타	신종감염병대응과, 질병정책과